
햇빛소득마을 소개자료

2026. 4.



행 정 안 전 부
햇 빛 소 득 마 을 추 진 단

☐☐ 목 차 ☐☐

1. 사업 개요	1
가.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1
나. 햇빛소득마을 정의	2
다. 사업 유형	4
라. 사업 규모 및 대상	6
마. 사업 참여시 준수 사항	8
라. 권고 사항	11
마. 참여주체별 주요 역할	13
바. 정부 등 지원 사항	17
[참고] 태양광 발전 용어	21
2. 사업 추진 절차	23
가. 사업준비	26
나. 사업선정	40
다. 사업시행	49
라. 사후관리	65
3. 주요 질의응답	68
4. 지원신청 서류 [서식 등]	76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사업추진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제4조(시책과 장려등) 정부는 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제27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재생에너지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협동조합 출자 방식 등으로 참여 가능

□ 추진배경

-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공동체성 회복,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주민 주도형 마을 태양광 전국확산 필요

□ 기본방향

-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사업구조 구축
- 비용 합리화와 지역 밀착지원을 통해 실행력 있는 사업기반 마련
- 유희부지를 활용한 분산형 태양광 보급을 통해 전국 확산기반 조성

□ 기대효과

- 햇빛소득 발전소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제2의 소득을 창출하여 주민 소득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 운영체제 구축으로 공동체 회복과 마을 자치역량 강화에 기여
- 재생에너지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국정과제 39-4】 햇빛·바람연금 확대,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등으로 지역소득 증대

나 햇빛소득마을 정의

□ '햇빛소득마을' 이란?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공부지·저수지·농지·마을창고지붕 등 지역 자원(마을 유휴부지)을 활용하여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발생한 발전수익을 공동체 복리 증진과 경제 활성화 등에 활용하는 소득창출 사업 모델입니다.

□ 사업형태 및 수익활용 개념도



< (유사 사례) 여주 구양리 마을 '햇빛두레발전소' >



주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참여자	마을주민 70가구 120여명(지분 100%)
규모	998kW(사업용) 마을 공동부지 6곳 활용(일반부지 2곳(204kW, 480kW), 창고 지붕 2곳(76kW, 36kW), 체육부지(31kW), 풋살구장 주차장(72kW))
토지·건물 소유주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구양리 새마을회
모듈	현대에너지솔루션 495W 모듈 사용(무탄소 1등급 활용)
총 사업비	약 1,667백만원(VAT, 계통연계비 등 포함)
자금조달	타인자본 14.4억원(정부융자* 10.2 + 신협 대출 4.2) 자부담 2.3억원(자부담+한강수계관리기금+sk하이닉스 보상금)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시설자금(기후부)
수익현황	약 1,000만원/월
수입	한전 전력판매, REC판매 등
지출	정책지원금 및 일반대출 상환, 세금·태양광보험 등 관리운영비
이익공유	마을버스 운영, 마을식당 무료 점심, 장학금 수여 등 주민복지 사업
주요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수익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내 6개 발전소를 하나로 묶어(1MW) 연 평균 1억원의 발전수익 (매달 1천만원 가량) ○ 수익의 100% 마을공동체에 환원(사회적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 식당 및 행복버스 운영 - 일자리 창출 및 세대 융합 - '햇빛소득마을'의 표준 모델 제시(정책적 의의)

다 사업 유형

햇빛소득마을은 도로, 공공부지, 저수지, 농지 등 다양한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마을 주변 유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마을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 설치 장소에 따른 발전사업 유형

- 마을별 설치를 원하는 태양광 용량에 준하는 부지 확보를 위해 마을 여건에 따라 건축물, 유휴 농지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

육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형) 마을회관, 축사 등 건축물의 옥상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토지이용률을 극대화 가능 <p>(활용자원) 마을회관, 축사, 공공건축물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형) 농지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발전하는 방식으로 농업생산과 에너지생산을 동시에 달성 가능 <p>(활용자원) 공공기관 비축농지, 임대 가능한 개별 농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휴부지형) 도로·철도·자전거도로 주변, 군부대 등 유휴부지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발전하는 방식 <p>(활용자원) 마을 주변 공공용지 등</p>
수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수지 등 수면 위에 부유식 구조물을 설치하여 토지 훼손없이 발전하는 방식으로 수면의 냉각효과로 발전 효율이 높아짐 <p>(활용자원) 공공기관·지방정부 저수지, 기타 공유수면</p>
혼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주변 저수지, 농지, 마을회관 등 활용가능한 유휴공간에 옥상형·영농형·수상형 등 태양광 설비를 복합 구성하는 방식으로 최적의 발전효율을 확보 하고 토지이용률을 극대화 <p>(활용자원) 저수지, 농지, 마을회관 옥상, 공용부지 등</p>

□ 발전 설비 방식

<p>PV형 (기본형)</p>	<p>태양광 접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계통의 연계용량 여유가 있는 경우 적용 ○ 한전ON 사이트에서 계통여유 정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ON(online.kepco.co.kr) 접속 → 전력계통 통합정보 → 배전망 계통여유정보 → 배전선로 여유용량 조회 → 주소입력 → 조회(상세보기) ※ 위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여유용량은 한전 전력거래계약 접수 후에 확인
<p>복합형 (PV형 +ESS)</p>	<p>ESS 설치조건부 태양광 접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계통의 연계용량이 없는 경우 적용 ○ ESS(저장장치)를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한해 조건부로 접속 허용 ○ ESS 설치조건부 접속제도 활용 시 다수의 장소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될 경우, 각 연계점마다 ESS를 설치하여야 함 ① 주간시간대 (08~15시) : ESS 충전만 가능, 계통송전 불가 ② 야간시간대 (15~08시) : 계통송전 가능 <p>【 ESS 설치조건부 태양광 접속 제도 개념도 】</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327 1361 842 1749"> <p style="text-align: center;">주간시간대(08~15시)</p> </div> <div data-bbox="847 1361 1394 1749"> <p style="text-align: center;">야간시간대(15~08시)</p> </div> </div>

* 전력계통 연계용량 여유가 있는 경우 태양광(PV) 접속을 기본으로 하며, 연계용량이 없는 경우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 또는 ESS 설치조건부 태양광 접속 가능

* PV(Photovoltaic) : 태양광 발전

* ESS(Energy Storage System) : 에너지 저장 장치

라 사업 규모 및 대상

'26년은 300kW~1,000kW 발전규모의 햇빛소득마을 500개 이상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구성, 주민동의, 설치재원, 전력계통 등이 확보되고 마을 발전소 건설·운영이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 규모

- (개소수) '26년 햇빛소득마을 500개 이상 선정
- (발전 규모) 마을당 발전설비 설치 용량 300kW ~ 1,000kW
 - * 1,000kW 초과일 경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他요건 충족 여부,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 * 500kW 이상으로써 이격거리 기준 준수 및 주민참여금액이 총사업비의 4% 이상일 경우 추가 REC(+0.2)를 부여받을 수 있음

□ 참여 대상

- 마을에 태양광 발전소(사업용)를 건설하고, 전력판매로 발생한 수입을 마을 복지사업, 주민소득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마을 공동체
- (신청자) 사업대상지에 법인 주소를 등록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을 주관하고 관할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신청
 - * 필요시 사회연대경제조직 또는 중간지원조직 전문가도 협력을 통해 참여 가능
 - ** 하나의 행정리에는 하나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청 가능 (하나의 행정리에 다수의 (사회적)협동조합 신청시 각각의 신청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 다수의 마을이 하나의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태양광 사업 추진 가능
- (제출자) 사업 관할 기초 지방정부
 - * (제출서류) ①사업지원 계획서(기초 지방정부 작성) 및 ②사업계획서((사회적)협동조합 작성)

□ 참여 요건

- 마을·주민·조합원의 범위와 마을 공동체의 정의를 만족하여야 함
 - (마을의 범위)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른 행정리
 - (주민의 범위) 공고일 기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조합원의 범위) 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마을 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마을 자치규약 등에 따라 주민 자격을 갖춘자
 - (조합의 정의) 상기 조합원 범위에 해당하는 자 10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 (발기인의 범위)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협동조합 설립 의사를 가진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한 가구에서 1명 초과 인원은 불인정
-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하여야 함
 - (발전사업 추진)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토록 주민 수용성, 자금, 부지와 계통* 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 정부, 지방정부 지원 등을 통해 ESS를 연계하는 경우도 포함
 - (태양광 발전사업의 규모) 총 300kW 이상 1,000kW 이하 원칙
 - (재원) 발전사업 허가 취득을 위해 태양광 설치비의 15%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함(계통연계비 포함, 부지 매입, ESS 설치 비용은 별도)
 - (재원 조달) 마을 공동체의 기금(기존 마을 기금 또는 마을 펀딩* 등), 정부·지방정부 정책 자금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야 함
 - * 마을 펀딩 및 출자 시 개인 출자 비율은 전체 주민 출자금의 10% 이내로 제한
 - (지역금융 협력) 지역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한 지역 기반 자금조달(대출, 출자) 참여 가능
 - * 다만, 자금조달 시 상호금융기관에 과도한 배당은 지양
- 동 사업은 주민이 직접 신규로 준비·추진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기존 발전소를 활용한 참여와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이미 득한 경우 또는 발전소의 양수·양도를 통한 참여는 제한함
 - * 공고일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 참여 가능

마 사업 참여시 준수 사항

사업 신청시 마을 다수 주민의 수용성 확보, 태양광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한전 계통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햇빛소득마을 신청을 위해 마을 주민의 동의를 득하여야 함

- (주민 동의) 햇빛소득마을 신청 및 선정을 위해 ①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 총회의 승인 및 ② 마을 자치규약에 따라 자격을 갖춘 주민이 70% 이상 동의하여야 함 /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② 마을 공동체는 공정성·투명성 등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함

- (주요 사업) 협동조합 정관에 주요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명시
- (공정성 확보) 마을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등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수입금의 활용에 대해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투명성 확보) 마을 공동체는 주요 의사결정, 협동조합 및 발전소 건설·운영, 수익금 활용 등 사업추진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 관련법에 따라 협동조합(조합원수가 200인 미만 포함)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함

- (수익 활용) 사업 수익은 마을 공동 활용(주민복지 사업 등), 지역 주민 배분(지역 화폐를 원칙으로 함) 등 지역 환원 구조로 운영하여야 함

* 다만, 지역화폐 배분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심사를 통해 검토 예정

* 수익 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명시하여야 함

③ 발전소 건설은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

- 태양광 건설 관련 일정수준 이상의 시공능력·실적 등이 확인된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을 통해 추진해야 함

*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 Renewable Energy Service Company)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통해 공개 예정

④ 태양광 모듈은 저탄소 모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버터, 구조물 등 각종 기자재도 산업·경제적 기여가 가능하여야 함

- (저탄소 모듈 사용) 태양광 모듈은 탄소배출량 검증제품 중 655kgCO₂/kW 이하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인버터 등 기자재) KS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⑤ 수입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또는 PPA 계약을 통해 확보하여야 함

-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발전사업 허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선정되거나, 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하여 수입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PPA계약은 민간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체결되는 사항으로, 정부가 직접 매칭 등을 하지는 않으며, 사업자 중심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방식임

⑥ 발전소 설치 시 전기설비 법정안전검사 준수

- (사용전검사) 검사 실시 이전에 반드시 전기안전공사 관할 사업소에서 사전기술검토를 완료해야함
- (정기검사) 최초 사용전검사 실시 후 설비 주기에 맞춰 검사 실시

* 정기검사 주기 : 태양광(4년), ESS(옥내:1년, 옥외:2년(단, 배터리용량1MWh 이상 1년))

⑦ 발전소는 햇빛소득마을 선정일로부터 일정 기한내 건설 필요

-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 후 12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 완료를 목표로 함

⑧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REMS에 연동 가능하여야 함

- REMS를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력생산량 및 고장유무 등 확인
* REMS : Renewable Energy Monitoring System(한국에너지공단 운영)

⑨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될 당시의 참여요건을 유지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요구에 응하여야 함

- (유지 의무)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될 당시의 신청, 평가한 요건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 결정
* 햇빛소득마을 참여요건, 의무사항 등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관련없는 마을공동체 정관의 변경, 협동조합 구성원의 변경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
- (제공 의무) 햇빛소득마을 선정 당시의 신청내용, 사업계획서 내용 등 유지여부와 추진현황 파악을 위해 자료 요청시 제공의무가 있음

⑩ 햇빛소득마을로 선정시 발전사업 허가 등 인허가 완료 후 한전에 전력거래계약 신청을 신속히 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선정 및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여유용량이 있더라도 한전 전력거래계약 신청 후에 연계여유용량 변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속한 신청 필요

⑪ 햇빛소득마을 통합 네트워크에 참여하여야 함

- 사업 지속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햇빛소득마을 통합 네트워크(가칭, 한국에너지공단 구축 예정)'에 참여하여야 함
* (주요기능) 마을 리더 등 보수교육, 마을복지사업 우수사례 공유 등

라 권고 사항

사업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수익과 장기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500kW 규모 설치, 유희부지 활용, 기자재 공동구매 등을 권고합니다.

- (REC) 추가 REC 부여를 위해 태양광 발전용량 500kW 이상 설치, 이격거리 기준 준수 및 주민참여금액이 총사업비의 4% 이상 권고
- (의사 결정)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투명·공정하게 추진하며,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지방정부 협업) 마을 공동체가 협동조합 구성과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 등 준비과정에서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 권고
- (이격거리) 기초 지방정부에서는 기존 조례에 있던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정을 「신재생에너지법」 제27의3의 이격거리 예외 조항* 시행일('26.9.18.)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

*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여주시의 경우 도시계획 조례를 선제적으로 개정('24.12.18.)하여 마을공동체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

< 조례 예시 >

▶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4항**

바.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사. 바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

1) (생략)

2)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

▶ **여주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3조제1항**

1. 마을공동체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 **(유휴부지 활용)**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해 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국·공유지와 건축물 상부(마을 공동시설 등) 활용 권고
- **(계통부족지역)** 전력계통의 연계용량 여유가 없는 지역의 경우 ESS 설치 지원을 계획중이며, 발전효율 제고를 위해 동서 수직형 태양광 등 다양한 방식 활용 권고

* ESS 설치 조건으로 계통 접속하는 경우 계통 포화 시간대에 ESS 충전 의무 이행 필요

동서 수직형 태양광이란?

▶ 동서 수직형 태양광은 패널을 지면과 수직으로 세워, 양면형 모듈을 통해 아침에는 동쪽면, 오후에는 서쪽면에서 발전하는 방식으로 오전/오후으로 발전 피크 분산



- **(다른 에너지사업과의 연계)**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른 에너지사업과 연계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권고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가스의 생산, 이용 및 발전사업 등 다른 재생에너지사업과의 연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표준계약서 활용)** 마을 공동체와 ReSCO의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계약 과정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의 도급계약서 활용을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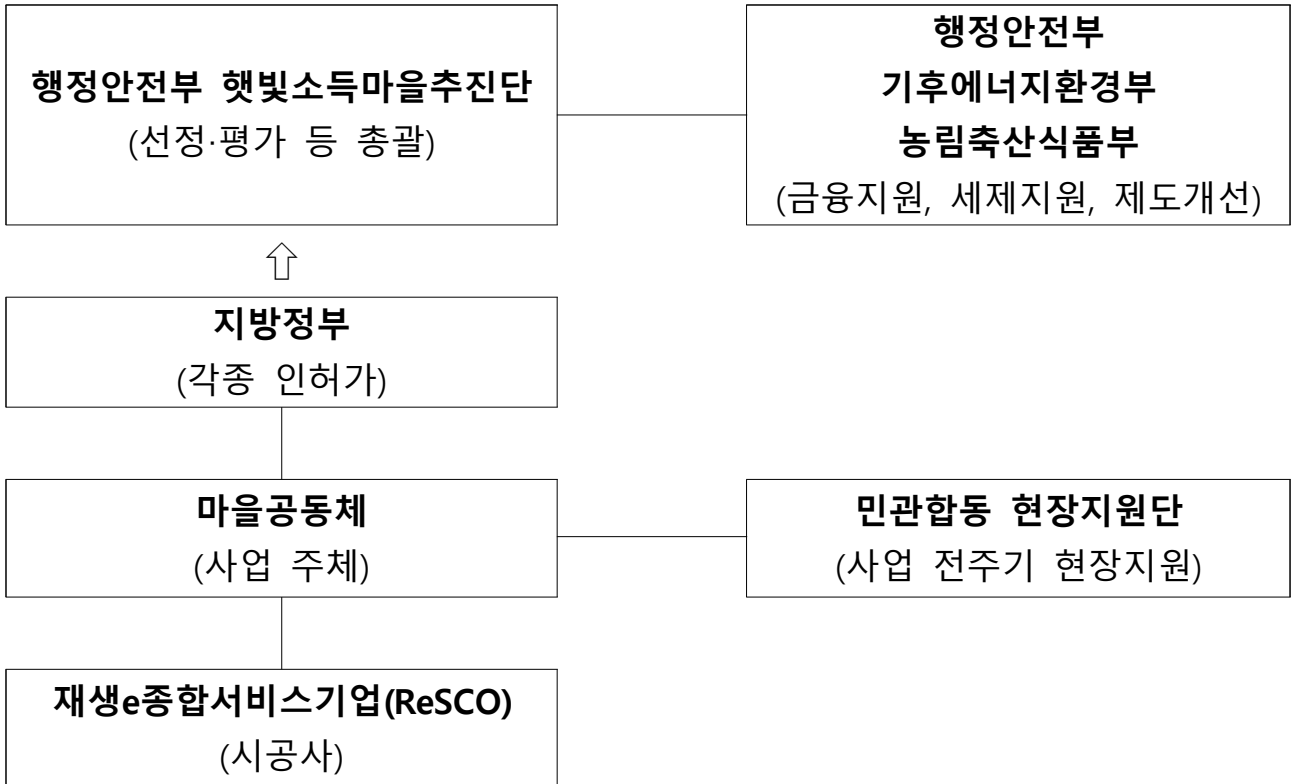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자료실-공지사항)에서 도급계약서 참고

- **(표준정관 활용)** 햇빛소득마을 추진을 위한 마을 주민 조직화 과정에서 햇빛소득추진단의 표준정관 활용을 권고

* 표준정관(안)은 공고 이후 지방정부를 통해 배포할 예정

마 참여 주체별 주요 역할

□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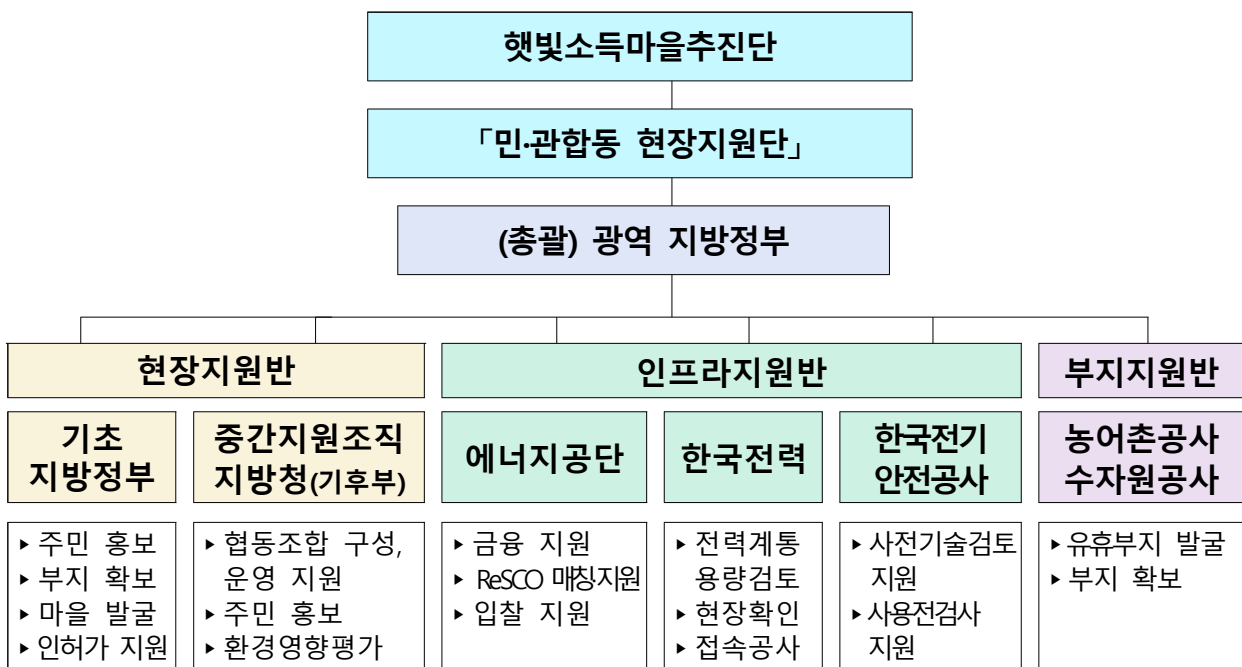


□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 (주요기능) 범정부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 총괄
 - 햇빛소득마을 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 기후부·농식품부 시설 지원 사업 추진 및 연계·조정 등

□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 **(주요기능)** 사업 초기안착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 해결 등
 - 사업 초기 주민의 사업 이해도 제고, 부지발굴, 협동조합 구성을 위한 지원 등 사업 착수를 위한 초기 준비 지원
 - 인허가 등 행정절차, 사업구조 설계, 전력계통 연계 여부 확인 및 문제 해결, 협동조합 운영 등 현장 애로사항 밀착 해결
- **(구성)** 광역 지방정부 중심의 협업 체계를 구성
 - * 광역 지방정부 (총괄) + 기초 지방정부, ^{기후부}지방환경청,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 각 기관은 지역·지사 단위로 전담 담당자를 지정(1~3명 내외), 지역 단위로 민관협력 네트워크 형태로 구성



- **(운영)** 주민 문의와 상담을 위한 창구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마련, 지역별 공공기관들이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체계로 추진

< 운영 절차(안) >

① 마을 (주민) → 기초 지방정부

- 사업 관련 문의 또는 지원이 필요한 마을은 기초 지방정부에 상담, 지원을 요청

② 기초 지방정부 → 광역 지방정부

- 기초 지방정부는 해당 사항을 자체 해결하거나 필요시 광역 지방정부에 지원 요청

③ 광역 지방정부 (해당지역 총괄) → 공공기관(본사, 지역본부)

- 광역 지방정부는 해당 사항을 자체 해결하거나 공공기관(지역본부·본사) 조치 요청

④ 공공기관 → 마을 (현장 문제 해결)

- 지역 공공기관 등은 현장 애로 해결을 지원, 필요시 임시 현장지원단을 통해 대응

-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 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 점검·해결 지원

- 광역 지방정부 중심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정례적으로 현안 점검

* 추진단·현장지원단 협의체도 정례화, 필요시 상시 협의 추진

<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초기 활동(안) >

① 찾아가는 주민 설명, 교육, 상담

- 광역 지방정부 주관 기초 지방정부 대상 설명회 및 희망 마을 수요조사
- 희망 마을에 찾아가서 사업 소개 및 전반적 추진절차 등 안내 (중간지원조직, 기후부 지방청, 지방정부, 에너지공단 등)

② 협동조합 조직화 지원

- 에너지공단이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강사단을 모집·교육·구성하여 권역별로 지방정부와 매칭
- 협동조합 구성, 운영 방안 및 구체적 사업추진 절차에 대해 안내

③ 부지 발굴 및 제공지원

- 기초 지방정부,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중심으로 유휴부지 발굴 및 제공
- 필요시 군부대, 도로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도 적극 협력

④ 사업추진 여건 사전 점검

- 계통 접속방안, 인허가 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등 확인하여 사업추진 여건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연요인 최소화
- 기초 지방정부 중심으로 한국전력, 에너지공단, ReSCO 등과 협력하여 지원

□ 주요 역할

참여주체		주요 역할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사업 기획·조정, 선정, 평가 등 총괄
협동조합		참여 주체
지방정부	광역	지역별 현장지원단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홍보 등 총괄 지방정부차원의 사업지원대책 발굴 신속한 협동조합 신고 지원 지역별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지원
	기초	햇빛소득마을사업 홍보 및 희망마을 발굴 마을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등 지원 공공부지(공유지 등) 발굴·제공 마을별 현안점검 및 문제해결 지원
중간지원조직		햇빛소득마을 사업 참여 유도 및 주민 교육·홍보 협동조합 구성·운영 지원, 공사설비 등 기술분야 전반 컨설팅 등
기후부 지방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지원 * 평가대상: 보전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이상, 농림지역 7,500㎡ 이상, 계획관리지역 10,000㎡
기후부 한국에너지공단		금융지원(재생e 금융지원사업, ESS 설치보조사업) ReSCO 풀(Pool) 관리 태양광 고정가격 경쟁입찰 참여 지원 신속한 REC 발급을 위한 RPS 행정처리 지원
한국전력공사		계통 여유용량 확인 및 접속 가능여부 확인 계통연계 개략공사비 산정 및 공사 설계·시공, 한전 PPA계약
한국전기안전공사		공사계획신고·인가 관련 사전기술검토 지원 및 수행 사용전검사 신속 수행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유휴부지 발굴 및 사용허가임대 지원(저수지, 비축농지 등) 사용허가 관련 적정성 검토 및 준공검사 지원 공사부지 활용 운영현황 확인 및 점검 지원
한국수자원공사		유휴부지 점사용허가 지원 (댐 저수구역, 수도용지의 국유지 등) 댐지원사업을 통해 사업부지(또는 ESS 설치) 무상지원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ReSCO)		태양광 발전 시공, 사업 전주기 지원

바 정부 등 지원 사항

- 전주기 진도관리(추진단) - 지역 밀착지원(현장지원단) 이원화 체계 구축
 - 정부지원 사항 연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단이 총괄, 지역에서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이 현장 실행 지원
 - 사전점검,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연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
 - * 민관합동 협장지원단내 기관별 담당자 지정 → 주기적으로 마을 순회 애로청취 등 관리
 - ** 인허가, 자금조달, 계통연계, 준공검사 등

< 사업추진 단계별 정부 등 지원사항 >

사업 단계	정부 지원사항
공고 ·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단체(협동조합) 조직화 및 운영 지원 (중간지원조직) · 주민 교육, 홍보 (중간지원조직, 에너지공단) · 부지 제공, 발굴 등 지원 (지방정부, 수공·농공 등 공공기관) · ReSCO 등록, 공개 (에너지공단)
↓	
선정 ·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사업허가, 공사계획인가 등 신속 지원 (지방정부, 기후부) · 계통연계 가능 여부 및 계통연계 개략공사비 등 검토 (한전) · 설치·시공 방향, 최적 배치·공사계획 등 검토 (ReSCO) ·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 참여 지원 (기후부·에너지공단)
↓	
공사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비 85% 용자 (기후부·에너지공단, 농협 등 금융기관) · ESS 설치 지원 (기후부·에너지공단·한전)
↓	
준공 ·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하게 준공검사 수행 (지방정부) · 사전기술검토,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수행 (전기안전공사) · 신속하게 RPS 대상설비 확인, REC 발급 (에너지공단) · 발전설비 운영,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ReSCO)

□ 주민참여 협동조합 구성 지원(중간지원조직 등)

- 시·도 및 시·군·구 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이 경험·노하우에 기반한 협동조합 설립 정보 제공 및 행정처리 지원

□ 주민교육 및 홍보 지원(기초지방정부·에너지공단)

- (지방정부) 마을 주민 대상 햇빛소득마을 사업설명회 개최 지원
- (에너지공단) 햇빛소득마을 전문 강사를 육성하여 거점형 교육* 및 찾아가는 마을리더 교육**을 운영 지원

* 읍·면 소재지 인근 등 2~4개 마을간 연계하여 통합 교육 운영

** 이장, 부녀회장 등 대상 1일 3차시(2시간) 과정 교육 운영

- 예비강사 설명회 및 양성교육을 통해 전국단위 전문 강사단을 양성하고 권역별 강사풀 구축

- 교육 신청 접수 및 강사 매칭을 통해 교육 실시('26: 500개 마을)

* 교육 신청 및 접수는 별도 홈페이지 구축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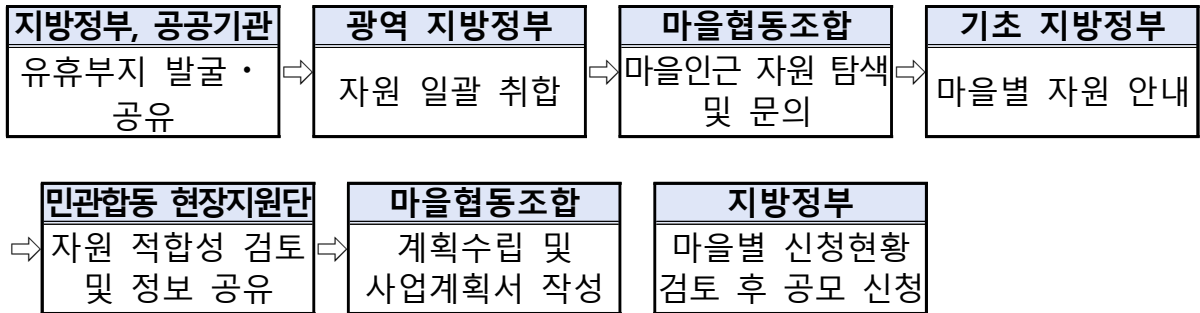
< 마을리더 교육 프로그램(안) >

구 분		교육 내용
1차시	0.5시간	<input type="checkbox"/> 마을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 - 햇빛소득마을의 개념 및 정부 정책의 취지와 방향 이해 - 태양광 바로알기(팩트체크), 마을협동조합과 마을공동체의 이해
2차시	1시간	<input type="checkbox"/> 햇빛소득마을 단계별 로드맵과 우리마을 햇빛발전소 만들기 - 햇빛소득마을 준비부터 실행·유지보수까지 단계별 로드맵 - 햇빛소득마을 4대 요소(부지, 금융, 계통, 주체) 이해 - 우리마을에 햇빛소득마을 모델 그리기
3차시	0.5시간	<input type="checkbox"/> 질의응답

□ 부지 발굴 및 임대 지원(지방정부 · 공공기관 ·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 지방정부 · 공공기관 소유의 저수지, 댐, 비축농지 등 유휴부지 정보 제공 및 임대 지원
- 유휴부지 정보를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통해 지방정부에 제공
→ 기초 지방정부는 참여 희망마을 수요조사 및 사업추진 지원

< 햇빛소득마을 자원 활용계획 >



□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목록 공개(에너지공단)

- 전문인력 보유, 시공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목록 공개(4월중)
-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매달 업데이트 예정)

□ 각종 인허가 지원(기초지방정부, 기후부)

- 발전사업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전기안전검사, RPS 설비확인 등 각종 행정절차에 대해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처리 지원

□ 사전기술검토 및 사용전검사 지원(한국전기안전공사)

- 공사계획인·허가 관련 사전기술검토 실시 및 사용전검사의 원활한 처리 지원

□ 계통 연계 지원(기후부, 한국전력공사)

- 계통연계 가능 여부 확인, 변전소 · 계통접속 거리에 따른 비용 산정
- 햇빛소득마을 지정시 계통 포화지역 중심으로 태양광과 연계하는 ESS 설치비용의 최대 90% 지원(정부 50%, 지방정부 40%) 사업과 연계
- * 세부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등은 2026년도 햇빛소득마을 ESS 지원사업 공고(예정) 참조

□ 세제지원(행안부)

- 인구감소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 창업 시 지방세 감면
* (취득세) 부동산 취득시 면제, (재산세) 최초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면제

□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 지원(기후부·에너지공단)

- 태양광 장기 고정가격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 입찰 트랙 신설 검토
* 입찰 관련 세부 조건은 2026년도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지(예정) 참조

□ 금융지원(기후부, 에너지공단)

- 마을협동조합의 초기 투자부담 완화와 사업성 확보를 위한 「신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정책자금* 대출 연계 지원
* 총사업비의 최대 85%까지 용자지원(금리 2.0%(분기별 변동),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 세부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등은 2026년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에너지공단)

구 분	마을 태양광
지원대상	마을주민 10인이상 출자한 협동조합
설비용량	발전설비 300~1,000kW 미만
지원비율	총사업비의 최대 85%
대출조건	2.0%(분기별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지원한도	300억원 이내, 자금신청 최소금액 30백만원
비 고	지원한도, 대출조건 등은 기후에너지부 계획에 따라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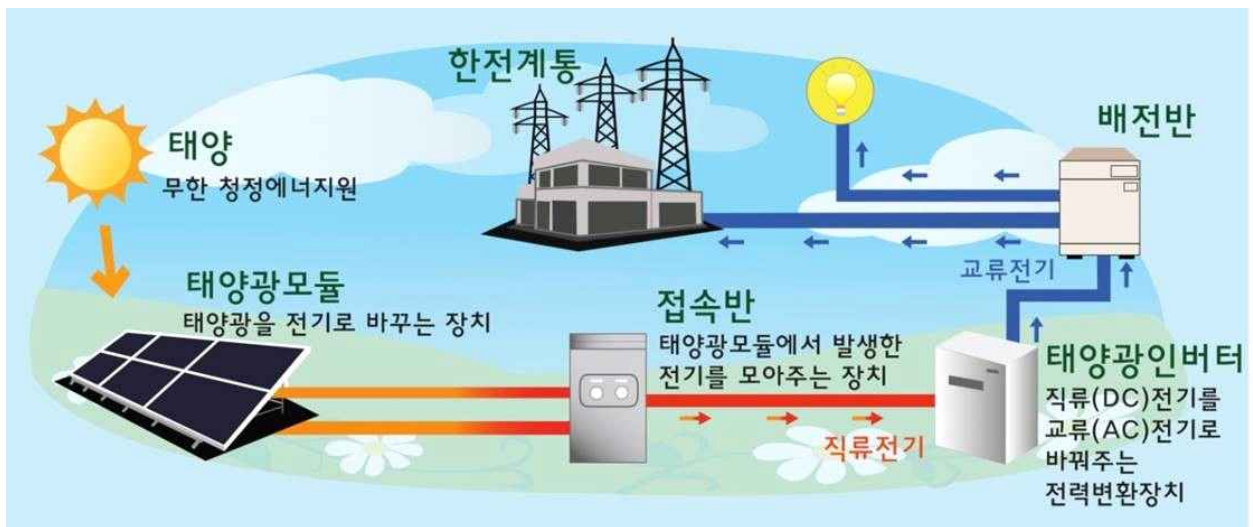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주민참여사업 기준에 만족(500kW이상, 이격거리 기준, 주민 참여율 등)할 경우 최대 0.2의 추가 가중치 부여

□ 준공·운영 단계 지원(기후부, 에너지공단)

- (REMS 연계) 태양광 설비에 데이터수집장치를 설치하여 설비별 고장 유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에너지공단)
* rems.energy.or.kr을 통해 접속하여 설비 계통도, 설비상태 이력, 발전량 실시간 확인

참고 태양광 발전 용어 설명

용어	의미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table border="1"> <tr> <td>에너지법 제2조</td> <td>“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함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의미)</td> </tr> </table>	에너지법 제2조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함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의미)															
에너지법 제2조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함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의미)																	
와트 (W, Watt)	▶ 전력을 나타내는 단위, 일반적으로 설비의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																	
와트시 (Wh, Watt-Hour)	▶ 전력량을 나타내는 단위, 일반적으로 발전량을 나타내는 단위																	
와트(W)와 와트시(Wh)의 규모 환산	<table border="1"> <thead> <tr> <th>단위</th> <th>W(Wh)</th> <th>kW(kWh)</th> <th>MW(MWh)</th> <th>GW(GWh)</th> <th>TW(TWh)</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규모</td> <td>1,000</td> <td>1</td> <td>0.001</td> <td>0.000001</td> <td>0.000001</td> </tr> <tr> <td>1,000,000</td> <td>1,000</td> <td>1</td> <td>0.001</td> <td>0.000001</td> </tr> </tbody> </table>	단위	W(Wh)	kW(kWh)	MW(MWh)	GW(GWh)	TW(TWh)	규모	1,000	1	0.001	0.000001	0.000001	1,000,000	1,000	1	0.001	0.000001
단위	W(Wh)	kW(kWh)	MW(MWh)	GW(GWh)	TW(TWh)													
규모	1,000	1	0.001	0.000001	0.000001													
	1,000,000	1,000	1	0.001	0.000001													
발전사업	▶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재생에너지	▶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태양광 모듈	▶ 태양에너지가 입사되어 전류를 생성시키는 곳
접속반	▶ 모듈에서 발생된 직류 전력을 모아 인버터로 전달하는 기기
인버터	▶ 태양전지에서 생산된 직류전기를 교류전기로 바꾸는 기기
ESS	▶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점에 쓸 수 있게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장치)	해주는 '거대한 보조 배터리' 시스템
배전반	▶ 인버터에서 나온 교류를 계통에 공급하기 위해 전기적으로 분배·보호하는 설비(접속함)
한전계통	▶ 전력계통(전기망)에 연결되어 발전한 전기를 송전·배전하는 체계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	▶ 기상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좌우되는 재생e특성을 고려하여 허용용량 이상 재생e를 추가 접속하고, 발전량이 급격히 오르는 시간에 출력을 제한하는 제도
출력제어	▶ 수급 불균형 및 안정적인 송·배전선로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
공급의무자	▶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
의무공급량	▶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공급인증서)	▶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기계를 통해 전력을 생산·공급하였을 때 발급되는 인증서
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입계약)	▶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구매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한전과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 고시에 따른 가격으로 거래
SMP (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 가격)	▶ 한전에서 태양광 발전소로부터 매입하는 전기 단가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2. 사업 추진 절차

구분	사업절차	세부내용	담당기관
사업 준비	주민 수용성 확보	○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동의서 작성	기초지방정부 마을공동체
	마을협동조합 설립	○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협동조합 설립 - 조합원수, 조합원 자격 요건 등을 준수하여 협동조합 설립	마을공동체
	시공사(ReSCO) 선정	○ ReSCO 등록업체 중 해당 마을 사업유형의 적합업체 선정 * 태양광 건설 관련 일정수준 이상의 시공능력, 실적 등이 확인된 기업을 ReSCO로 등록하고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공개	마을협동조합
	사업대상지 조사	○ 비축농지, 저수지, 마을 유휴부지 등 사업 후보지 조사 - 전력계통 연계가능성, 주민수용성, 인허가 가능성 등 검토	기초지방정부 마을공동체
사업 선정	사업 신청	○ 사업 신청서 작성·제출(마을협동조합 → 지방정부 → 추진단) -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부지확보, 계통연계여부 등)	마을협동조합 기초지방정부
	평가 및 선정	○ 사업 대상자 평가 및 선정 - 계량평가 + 사업계획서 평가(비계량) + 현장평가(필요시) -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 후 공고	추진단
사업 시행	실시설계	○ 실시설계 및 사업비 산출	ReSCO

발전사업허가(60일) (전기사업법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사업허가(사업권 확보) * (3MW 이하) 시·도지사, (3MW 초과) 기후부 	기초지방정부	
↓			
개발행위허가(15일) (국계법 제6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행위허가 - 입지에 따라 농지산지공유수면 전용허가 등 병행 	기초지방정부	
소규모환경영향평가(30일)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환경영향평가(환경적 타당성 검토) * 계획관리지역(10천㎡이상), 농림지역(7.5천㎡ 이상), 보전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5천㎡이상) 	지방환경청	
재해영향평가(30+10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재해영향 평가 협의 * 재해영향성검토 : 면적 관계없음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30+10) : 면적 5천~5만㎡, 길이 2~10km * 재해영향평가(45+10) : 면적 5만㎡이상, 길이 10km이상 	기초지방정부	
↓			
전력거래계약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허가 완료 후 전력거래계약 신청 	<계통연계> (한전)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			
공사계획신고(20일) (사전기술검토) (전기사업법 제6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 발전설비 설치공사 진행 전 공사계획신고 - 고압이상 연계형 또는 용량 500kW 태양광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전기술검토서 첨부 * (10MW 미만) 기초(광역) 지방정부 신고, (10MW 이상) 기후부 인가 	신청·접수	기초지방정부 (한국전기안전공사)
↓			
정책자금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계획신고 필증 발급 후 재생e금융지원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에공단) → 대출 신청(금융기관) ○ ESS 설치 보조사업 신청(기후부) 	용량·기술 검토	마을협동조합 ReSCO
↓			
착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공사 착공, 주요자재(모듈 등) 반입 	공사설계·시공	ReSCO
↓			

	사용전검사(7일) (전기사업법 제6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검자 준비자료(성적서) 관련 적정성 확인 - 확인 및 검사실시 : 한국전기안전공사 ○ 공사계획신고 내용 및 설비기준 적합 여부 검사 ○ 사용전검사 전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 용량에 따라 선임(상주) 또는 위탁 가능 - (1MW미만) 위탁, (1MW이상) 상주, (20kW이하) 제외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력거래계약 체결 (전기사업법 제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선계기설비 점검 완료 후 봉인 및 통보 * (1MW 이하)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 (1MW 초과)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		
	준공검사(7일) (국계법 제6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검사 및 상업운전 	기초지방정부
↓			
사업개시신고(14일) (전기사업법 제9조) RPS 설비확인, REC발급 (재생e법 제12조의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설비 사업개시신고(사용전검사, 준공 이후) * (3MW 이하) 지방정부, (3MW 초과) 기후부 ○ REC 발급을 위한 RPS 설비확인(사용전검사 후 1개월 이내 신청) 	기초지방정부 한국에너지공단	
↓			
사후 관리	발전설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햇빛소득마을 조성 결과 보고(지방정부→추진단) ○ 발전설비 운영, 유지관리, 수익금 관리 등 	기초지방정부 마을협동조합
	↓		
정기검사(7일)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설비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 검사 실시 - 태양광 발전설비(4년 주기) - ESS (옥내 1년, 옥외: 2년(단, 배터리용량 1MWh 이상 1년)) 	한국전기안전공사	

가 사업준비

1) 사업대상지 조사

햇빛소득마을 사업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지 미리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아래의 주요 항목을 확인하고 사업조사서를 작성합니다

□ 주요내용

- 마을 주변에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사업대상지 발굴
- 비용 절감을 위해 지방정부, 공공기관, 마을 유희부지 활용 적극 권고

□ 지원 사항

- (기초지방정부)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건축물, 토지(유희부지), 저수지, 기타 국·공유지 등을 조사·발굴하여 부지 확보 및 임대 지원

* 임대료는 지방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부과

< 정보 확인 및 지원 절차 >

	주요 내용	담당기관
정보제공	관내 개발 가능한 국·공유지 정보 제공	지방정부 → 지원단
정보요청	국·공유지 정보 요청	마을협동조합 ⇄ 지원단
지원요청	태양광 설치 가능여부 조사 지원	마을협동조합 ⇄ 지원단
임대지원	국·공유지 임대	기초지방정부

- (농어촌공사) 저수지, 비축농지 등 유희부지 조사·발굴하여 정보 제공 및 임대 지원

① (저수지) 개발 가능한 저수지 정보를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통해 확인하고, 마을협동조합 요청 시 입지 검토 및 임대 지원

- 저수지는 수상형 태양광으로만 사용 가능

* 임대료는 총수익금의 5%/년 부과(농어촌정비법 시행령 32조)

< 정보 확인 및 지원 절차 >

	주요 내용	담당기관
정보제공	개발 가능한 저수지 정보 제공	농어촌공사 → 지원단
정보요청	저수지 정보 요청	마을협동조합 ⇔ 지원단
지원요청	태양광 설치 가능여부 조사 지원	마을협동조합 ⇔ 지원단
임대지원	저수지 임대	농어촌공사

② (비축농지) 임차자 없는 비축농지는 농지은행 통합포털을 통해 직접 확인*, 임차 비축농지는 농어촌공사 확인 후 지원단을 통해 제공

* 농지은행 통합포털(www.fbo.or.kr)에 회원가입후 확인 가능

- 비축농지는 영농형 태양광으로만 사용가능하며, 민·관합동 현장 지원단을 통해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 조사

-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비축농지는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 임대 여부를 확인하고, 햇빛소득마을 선정 후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임대료** 납부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업무지침(농어촌공사)

** 임대료는 '표준임차료(해당지역 관행임차료 평균 수준)'의 50~100% 범위내에서 임차인과 합의하여 결정(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업무지침, 농어촌공사)

- 비축농지 임차자에 따라 임대 협의 과정이 다르며, 기존 임차자는 64세까지 임차연장이 가능하므로, 태양광 가능여부 확인 필요

* (임차자X) 협동조합 구성원이 임대 협의

(임차자:마을주민) 임차자를 협동조합 구성원으로 가입시켜 임대 협의

(임차자:외부주민) 임차기간 종료 후 협동조합 구성원이 임대 협의

< 정보 확인 및 지원 절차 >

	주요 내용	담당기관
정보요청	비축농지 정보 요청	마을협동조합 → 지원단
정보확인	임차자 없는 비축농지는 포털에서 직접 확인	마을협동조합
	임차 비축농지 정보 요청 검토 결과 송부	지원단 → 농어촌공사 농공 → 지원단 → 마을협동조합
지원요청	태양광 설치 가능여부 조사 지원	마을협동조합 ↔ 지원단
임대지원	비축농지 임대	농어촌공사

○ **(수자원공사)** 댐 저수구역, 수도용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해당 마을 유희부지 확보 등 지원

① **(댐 저수구역 · 수도용지)** 수자원공사 관할지사를 통해 사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지원단과 함께 태양광 설치 가능여부 조사

- 관련법령에 따른 점용 ·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납부 후 유희부지로 사용 가능(댐 저수구역: 하천점용허가, 수도용지: 국유재산사용허가)

* (댐 저수구역) 연간 점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30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

* (수도용지)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에 최대 50% 감면 가능(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

② **(댐 주변지역)** 댐지원사업*을 통해 댐 주변지역 유희부지를 수자원공사가 구매 후 마을협동조합에 무상 임대('26: 10개소 예정)

- 댐지원사업 지원 가능 마을 여부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지방정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71개 시군구, 393개 읍면동, 1,800여개리)

- 댐지원사업 공고(1차: 4.13.~5.15./2차 ~7.9., 댐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 등)를 통해 마을을 선정(10개소 내외)하여 부지 구입 또는 ESS 설치 지원

* 지원조건(안): (부지 구입) 최대 3천평(1,000kW 상당), 2억원 이내 지원
(ESS 설치) 300~1,000kW 내외 1.5억원 이내 지원

○ **(한국전력공사)** 사업 참여 희망마을의 사전 조사 지원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 계통연계 개략공사비 등 안내

* 마을의 사전 확인이 불충분한 경우, 신청 후 평가 과정에 있더라도 추진단이 한전을 통해 추가 확인하여 평가 및 안내

□ 주요 검토 사항

구분	검토사항	담당기관	
이격거리(공통)	발전시설과 도로 및 주거지 등과의 최소 거리 (이격거리*) 준수	기초지방정부	
진입도로(공통)	공사 장비가 현장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진입도록의 폭과 도로 상태 등을 확인 (최소 폭 3m 이상, 권고사항)	기초지방정부	
계통연계여부(공통)	계통연계가능여부 확인**(지번, 전주번호, 용량)	한국전력공사	
일사량(공통)	낮 시간 동안 햇빛이 잘 드는 부지인지, 장시간 그림자(음영)가 생기지 않는지 확인 (오전 10시~오후 3시 일사량(햇빛) 확인)	마을공동체	
사업부지 임대 및 허가 여부	저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저수지에 낚시터 등 사용허가 승인을 받은 곳이 있는지 확인 기존 사용허가 승인 대상이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영향을 주는지, 영향을 준다면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지 등 검토 용수 공급 시 수상형 태양광 모듈이 저수지 바닥에 닿지 않는 곳에 설치(권고)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청부지 임차인 有/無 확인 · (임차인 無) 협동조합 구성원이 임차한 후 태양광 부지로 사용 가능 · (임차인 有) 임차인 마을주민 여부 확인 - (마을주민 ○) 임차인이 협동조합의 구성원 이어야 태양광 부지로 사용 가능 - (마을주민 X) 임차기간 종료 후 기존 임차자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협동조합 구성원이 임차한 후 태양광 부지로 사용 가능 	
	댐 저수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수소통의 영향 확인 · 수질오염의 영향 확인 · 기존 피점용허가 여부 	한국수자원공사
	수도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로기준 이격거리 확보 여부 확인 · 관로시설물 접근 용이성 확인 · 수도시설물 공사 및 관리 지장 여부 확인 · 상부 시설물 하중에 의한 관로 영향 확인 · 기존 피사용허가 여부 확인 	
댐주변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 지원사업 대상 여부 확인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이격거리 예외 조항 시행 예정('26.9.18.)

** 부지검토 단계에서 계통여유용량이 있더라도 한전 전력거래계약 신청 후에 연계 여유 용량 변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속한 신청 필요

3) 주민 수용성 확보

햇빛소득마을 사업 참여를 위해 마을 주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해나 갈등을 사전에 해소합니다. 주민 전원이
참석 가능하도록 개최 사실을 사전에 공고하고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주요내용

- 사업 참여를 위해 행정리 기준 해당 마을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 70% 이상의 동의* 및 마을 총회 승인** 필요(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해당 마을 주민 동의 비율에 따라 선정 평가 점수 차등 적용

①마을총회 의결서 제출	②주민동의서 제출	①+② 합계
10점	$((\text{주민동의비율}(\%) - 70\%) / 30\%) \times 5\text{점}$	최대 15점

** 모든 마을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마을회의 최고 의결기관(마을규약 등 운영)

- 주민동의서는 마을 주민이 직접 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자 및 발전위원회(구성된 경우)에서 확인하여 제출

* 단, 고령자 등 직접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의 구두 동의 하에 대리 작성 인정

□ 지원 사항

- (기초지방정부) 주민 의견 청취, 주민동의서 작성의 적정성 등 확인을 위해 사업대상지 마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 사업 추진 취지, 사업 구조, 주민참여 방식, 인허가 절차 등 사업 전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회 진행
 - 마을 이장 등 대표자의 협조하에 개최하며, 주민 과반 이상이 참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공지 및 참여 기회 보장

< 주민동의서 작성 및 관리 절차 >

주민동의서 작성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 후 주민동의서 작성
불참 가구 방문	마을대표가 주민설명회 불참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설명 후 작성
동의비율 확인	전체 가구수 대비 찬성 가구수를 계산하여 동의비율 충족여부 확인
2차 주민설명회	동의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반대 주민 협의 또는 추가 설명회 개최
주민동의서 확정	동의비율을 충족하는 경우 주민동의서 확정, 원본은 마을대표가 보관

4) 마을협동조합 설립

마을 주민을 대표하고 사업 전반을 관리할 마을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발전소 설치, 운영, 수익배분 등 공동 이익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 주요내용

- 공고일 전일 기준 1년 이상 마을에 거주하는 10인 이상 주민으로만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 지원 사항

- (중간지원조직 등) 시·도 및 시·군·구 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이 경험·노하우에 기반한 협동조합 설립 정보 제공 및 행정처리 지원
- (기초지방정부) 마을 협동조합 설립 신고·인가, 정관 공동기금 적립 조항 검토, 사업자 등록 지원
-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 구성 및 정관 작성 지원, 주민 대상 조합 운영 교육 실시

□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설립 기준

- (구성) 조합원 자격을 갖춘 마을 주민 10인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
- (조합원 자격) 공고일 전일 기준 1년 이상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를 두고 거주한 주민
- (출자비율) 특정한 사유화 방지 등을 위해 개인당 출자비율은 10% 이하로 제한
- (역할)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 시행과 관련된 전 과정 참여, 발전소 운영, 수익금 활용 등 사후관리

《협동조합 설립 절차》

1단계 발기인 모집

- 협동조합 설립 의사를 가진 최소 5인 이상의 창립 발기인 모집

2단계 정관 작성

- 조합의 목적, 사업범위, 의결권 등 운영기준을 명시한 정관 작성

3단계 창립총회 개최

- 협동조합 정관 임원의 선출, 출자금 납입 확인 등 조합 설립 의결

4단계 설립 신고·등기

-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정부, 등기소에 설립 신고·등기

5단계 사업자 등록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조합의 영업활동 개시

① 발기인 모집

□ 관련근거 :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1항(설립신고 등)

□ 구성

- (발기인의 범위)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정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존 조합의 경우 참여 가능
 - * 공무원·공공기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리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자는 참여 불가
- 조합 설립 후 햇빛소득마을 사업 신청을 위해 전체 조합원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으로 확대 모집

□ 주요 역할

구 분	내용
협동조합 설립 기획	· 협동조합 설립의 목적과 사업 방향을 논의하고, 추진계획 수립 · 협동조합 명칭, 사업유형 및 규모 등 협동조합의 기본구조 마련
대표 발기인 선출	· 발기인 간 협의로 대표 발기인을 선출하여 창립 초기 권한 부여
설립동의자 모집	·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설립동의자(조합원) 모집
정관(안)작성	· 협동조합의 운영원칙, 출자규정, 수익금 활용 등을 포함한 정관의 초안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
창립총회 개최	· 창립총회의 일시·장소 등을 확정하여 공고·통지 절차 진행 · 총회 진행계획을 수립하고, 회의자료(정관, 사업계획서 등) 준비
신고·등기절차 이행	· 창립총회 의결 후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등기신청서, 정관,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 절차 수행

② 정관 작성

□ 관련근거: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정관)

□ 작성절차

- 발기인 전원이 협의하여 정관 초안 작성
- 창립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통해 정관 확정

□ 정관 주요 기재사항

구 분	주요내용
법령사항	협동조합기본법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사항
권한위임사항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정관 필수기재 사항
권고사항	투명성 제고, 추후 분쟁 방지 등을 위해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하는 사항
기타사항	설립 이후 협동조합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자율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햇빛소득마을 기재사항	<p>햇빛소득마을 사업 참여를 위해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재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주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지역 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 수익 공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출자한도: 마을 펀딩 및 출자시 개인 출자 비율은 전체 주민 출자금의 10% 이내로 제한 - 조합원자격: 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마을 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마을 자치규약 등에 따라 주민 자격을 갖춘 자 - 재원: 발전사업 허가 취득을 위해 태양광 설치비의 15%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함(부지매입, ESS 설치 비용은 별도) - 수익활용: 사업 수익은 마을 공동 활용(주민복지 사업 등), 지역주민 배분(지역 화폐를 원칙*으로 함) 등 지역 환원 구조로 운영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부록1] 햇빛소득마을 표준정관과 공고문을 활용하여 마을 실정에 맞게 협의·조정하여 작성
- 세부적인 정관 작성방법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작성
 - * [참고] Coop 협동조합 자료실(WWW.COOP.GO.KR) 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
- 햇빛소득마을 기재사항은 정관에 필수로 작성되어야 하며 임의 변경 및 삭제 불가

③ 창립총회 개최

□ 관련근거 :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1항(설립신고 등)

□ 창립총회 개최 공고

- 개최 전 7일 이상 일간지 게재, 벽보 게시, 전자우편 등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 공고기간 7일 중 첫째날은 공고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공휴일 및 토요일 포함. 다만, 공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공고 만료

□ 개최 공고문 작성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필수 기재사항과 의결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공고문 기재사항	·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 조합원의 자격요건 ·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6조 1항
의결사항	· 정관 · 사업계획과 예산 · 임원의 선출 ·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6조 2항

□ 유의사항

-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소유하며, 이에 차등을 둔 경우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무효 및 과태료 부과

④ 협동조합 설립 신고

□ 설립신고 신청서류

-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아래의 총 10가지 설립신고 필수서류 제출
-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신고

신청서류		비 고	참 고
1	정관 사본	-	
2	설립신고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3	창립총회 공고문	-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5	임원명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6	사업계획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7	수입·지출예산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8	출좌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0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⑤ 협동조합 설립 등기

□ 설립등기 신청서류

-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총 9가지 설립등기 필수서류 제출.
- 협동조합 설립신고 후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설립 등기
- 설립등기 신청 전에 협동조합 창립총회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함
- 합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지방법원 산하)에 신고

신청서류		비 고	참 고
1	협동조합 설립등기신청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양식 (www.iros.go.kr)	
2	정관사본	-	
3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본	-	
4	임원 취임승낙서 임원 인감증명서 임원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5	설립신고 확인증 사본		
6	출자금 총액의 납입 증명서		
7	인감신고서		
8	인감대지	-	
9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0	위임장	-	

□ 등록면허세

구 분	세 액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합계	
설립 등기	출자금의 0.4% (최소 112,500원)	등록면허세의 20% (최소 22,500원)	출자금의 0.48% (최소 135,000원)	출자금의 1.44% (최소 405,000원)

⑥ 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해당하는 필수서류 제출
- 설립등기 완료 후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신청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 하는 가산세를 물게 되며, 상품 구입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청할 수 있음

	신청서류	비 고	참 고
1	신고확인증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국세청 양식 (www.nts.go.kr)	
2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국세청 양식 (www.nts.go.kr)	
3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	
4	정관사본		
5	조합명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6	민원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청의 경우	
7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의 경우	
8	자금출처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등에서 영업하는 경우	

나 사업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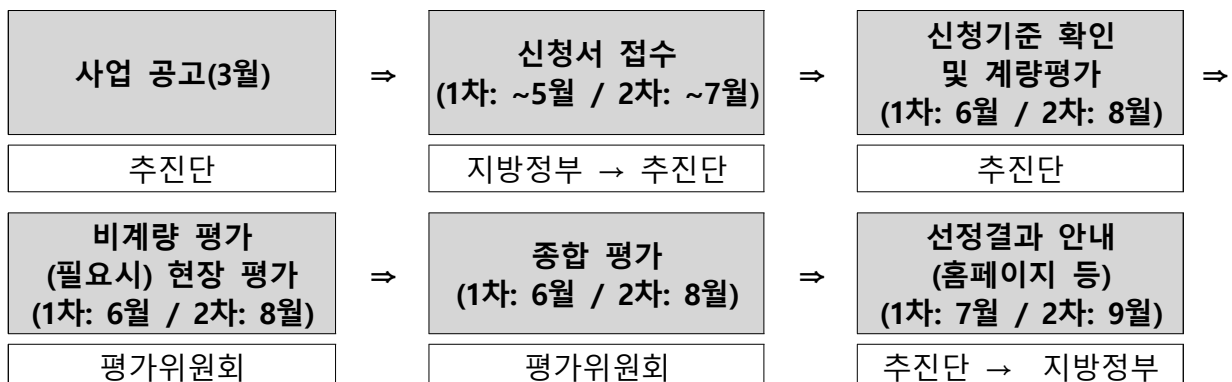
1) 사업 신청

공모계획에 따라 협동조합이 사업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절차로 기초 지방정부와 함께 시행지침에 정해진 양식과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주요 내용

- (신청 주체) 협동조합 + 지방정부
- (신청 절차) 마을협동조합 → 기초지방정부 → 햇빛소득마을추진단
 - 마을협동조합은 지원자격 및 요건을 준수하여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정부에 제출
 - 기초지방정부는 협동조합의 주민 수용성 확보, 부지 확보, 전력 계통 연계 등 사업 참여 조건을 검토하고 사업 신청
- (신청 접수 기간)

* 공고(3.31.) → 1차 접수 마감(5.31.) → 평가(6월) → 선정(7월) → 착수(8월)
 2차 접수 마감(7.31.) → 평가(8월) → 선정(9월) → 착수(10월)



- 신청서 접수일까지 형식적 접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마을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제출 필요서류 누락 등)
- 신청서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건수의 폭증으로 접수 여부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1일전까지 제출완료 권고
- **(제출 방법)** 기초 지방정부가 신청서 서류 일체를 PDF로 변환하여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햇빛소득마을추진단”에 공문으로 제출
 - * 공문에 일부 대용량 파일이 첨부 안되는 경우, 신청 서류 전체를 전자우편 (solar2026@korea.kr)으로 별첨 송부
 - * 기초 지방정부·관계기관 등 연락처는 별도 붙임파일 참고
- **(접수기준일)** 신청 접수일은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의 공문 수신일로 함
-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 제출서류에 미비·오류가 있거나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함
- **(선정결과 발표)** (1차) 2026년 7월 31일 / (2차) 9월 30일 예정

□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PDF로 제출하여야 하며, 파일이 정상적인지 반드시 확인

※ 각 파일명 엄수, 붙임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제출서류 목록 문서를 엄수하여 1개의 PDF 파일로 묶어서 제출

번호	내용
1	햇빛소득마을 신청전 체크리스트(서식1) ※파일명: 붙임1_체크리스트(00시·군 00면 00리)
2	햇빛소득마을 지원 신청서 (서식2) ※파일명: 붙임2_햇빛소득마을 지원 신청서(00시·군 00면 00리)
	첨부 : 마을총회 의결서(붙임 서식1)
	첨부 : 마을대표 증명서(이장 재직증명서 등)
	첨부 : 사업추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마을주민용) (붙임 서식2)
3	햇빛소득마을 사업계획서(마을공동체용, 서식3) ※파일명: 붙임3_햇빛소득마을 사업계획서(00시·군 00면 00리)
	첨부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서
	첨부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첨부 : 조합원 명부(붙임 서식3)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조합원용) (붙임 서식4)
	첨부 : 조합원별 거주 확인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
4	기타 증빙자료 ※파일명: 붙임4_기타 증빙자료(00시·군 00면 00리)
	첨부 : 태양광 건설예정지 증빙자료(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첨부 : 태양광 건설예정지 소유 증빙자료(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국공유지 임대의향서 등)
	첨부 : 마을기금 통장사본 등 재원 증빙 서류
	첨부 : 계통 연계 가능여부 검토의견 서류(한전 제공)
	첨부 :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기여 계획 증빙자료 (사용 예정제품의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모듈), KS인증서(모듈, 인버터) 등)
	첨부 :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
5	햇빛소득마을 사업지원계획서(기초 지방정부용, 서식4) ※파일명: 붙임5_햇빛소득마을 사업지원계획서(00시·군 00면 00리)
	첨부 :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

2) 평가 및 선정

추진단은 평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특정 마을에 대한 이해관계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거주지·근무지와 무관하게 권역별로 위원풀을 구성하고 계량·비계량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 평가 대상

- 햇빛소득마을 신청 협동조합

□ 평가 방법

- 계량평가 + 사업계획서 평가(필요시 현장평가)

* 사업계획서 및 현장평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 최종 평가대상 선정

- 계량평가 점수, 사업계획서의 평가 점수, 가점 및 감점의 합이 60점 이상

□ 동점 처리 기준

-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선정

- ① 사업(지원)계획서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 ② 평가지표 중 주민수용성(동의) 점수가 높은 경우
- ③ 평가지표 중 사업의 준비 정도 점수가 높은 경우
- ④ 평가지표 중 지방정부 참여 정도 점수가 높은 경우

□ 선정 통보

-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에 공문을 통해 통지 예정임

□ 평가 기준(안)

구분	평가지표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배점			
계량 평가 (최대 15점)	주민 수용성	○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대한 마을공동체의 주민수용성 확보 수준을 평가	15점			
		<table border="1"> <tr> <td>① 마을총회 의결서 제출(필수)</td> <td>② 주민동의서 제출</td> <td>①+② 합계</td> </tr> <tr> <td>10점</td> <td>$((\text{주민동의비율}(\%) - 70\%) / 30\%) \times 5\text{점}$</td> <td>최대 15점</td> </tr> </table> <p>* ② 주민동의비율은 70% 초과분에 대해 평가</p>		① 마을총회 의결서 제출(필수)	② 주민동의서 제출	①+② 합계
① 마을총회 의결서 제출(필수)	② 주민동의서 제출	①+② 합계				
10점	$((\text{주민동의비율}(\%) - 70\%) / 30\%) \times 5\text{점}$	최대 15점				
사업 계획서 평가 (최대 85점)	마을공동체 투명성	○ 마을공동체 구성·운영, 햇빛소득마을 사업 구조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계획되었는지 평가	15점			
		- 협동조합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 (5점)				
		-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 (5점)				
	사업의 준비 정도	○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수준 종합평가	15점			
		- 발전사업 추진위한 부지 확보의 적정성 (8점)				
		- 발전사업 추진위한 자원 확보의 적정성 (7점)				
	사업 계획의 타당성	○ 발전사업 건설·운영 계획의 합리성	10점			
산업·경제 효과	○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국내 경제·공급망) 기여도 평가	15점				
사업관리의 합리성	○ 발전사업 관리계획, 수익활동·회계관리 계획 등 합리성	10점				
지방정부 참여 정도	○ 햇빛소득마을 추진에 대한 광역·기초지방정부의 역할 종합 검토	20점				
	-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5점)					
	-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검토 등 노력 (6점)					
가점 (최대 8점)	정책 목표 우대 (계량평가)	○ 관련법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해당여부	3점			
	<table border="1"> <tr> <td>인구감소(관심)지역 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td> <td>해당없음</td> </tr> <tr> <td>3점</td> <td>0점</td> </tr> </table>			인구감소(관심)지역 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해당없음	3점
	인구감소(관심)지역 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해당없음				
3점	0점					
지방정부 참여 정도 (사업계획평가)	○ 지방정부 (공공기관 포함)의 부지 제공 여부	3점				
사업관리 (사업계획평가)	○ 햇빛소득마을 관리자의 채용 및 활용 계획	2점				
합계 (최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100점			

* 주민동의비율, 주민 수용성, 사업규모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계량 평가 >

□ 주민수용성(15점)

-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대한 마을공동체의 주민수용성 확보 수준을 평가

① 마을총회 의결서 제출(필수)	② 주민동의서 제출	①+② 합계
10점	$((\text{주민동의비율}(\%) - 70\%) / 30\%) \times 5\text{점}$	최대 15점

* ② 주민동의비율은 70% 초과분에 대해 평가

< 세부 평가내용 >

- ①마을 총회 의결서는 햇빛소득마을의 신청(태양광 발전소 건설 추진을 포함)에 대한 마을 자체 규약에 따른 마을 총회 의결한 결과를 제출
 - 햇빛소득마을 신청과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대해 최종 결정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마을 규약에 따른 대표 또는 마을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②주민동의서는 햇빛소득마을 신청과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대해 주민 동의서 제출, 제공된 양식에 따라 마을 주민에 대한 주민 동의 확인

< 사업계획서 평가 >

□ 마을 공동체 투명성(15점)

- 마을공동체 구성·운영, 햇빛소득마을 사업 구조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계획되었는지 평가
 - 협동조합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5점)

< 세부 평가내용 >

- 정관에 ① 조합원의 가입 자격을 민주적으로 설정한지 여부, ② 임원·감사의 선출과 임기·연임 수준 등이 적절한지 여부, ③ 총회의 소집·통지, ④ 조합원의 의견수렴 및 그에 대한 논의·의결 방안이 적절한지 여부, ⑤ 총회,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불복시 절차 규정 및 이해관계자의 분쟁 처리 규정의 마련 등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을 평가

-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5점)

< 세부 평가내용 >

- 정관에 ① 운영 정보의 공개 여부와 그 방법, 수준이 적절한지 여부와 ②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 여부 등을 평가

- 출자, 적립, 배분 등 수입의 활용 계획의 공정성·타당성(5점)

< 세부 평가내용 >

- 적립, 배분 등 수입의 활용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평가

사업의 준비 정도(15점)

-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수준 종합평가

-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확보의 적정성(8점)

< 세부 평가내용 >

-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정한 위치, 타당한 수준의 부지와 면적을 확보하였는지를 평가

-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의 적정성(7점)

< 세부 평가내용 >

-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절한 비용을 산정하였는 지와 그에 따른 자원 확보 수준을 평가

사업 계획의 타당성(10점)

- 발전사업 건설·운영 계획의 합리성

< 세부 평가내용 >

- 태양광 발전사업의 추진계획(발전사업 허가부터 준공까지 일정과 마을복지 또는 수익배분을 위한 수입의 확보 계획 등)의 합리성 평가

- 태양광 발전사업 형태를 고려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또는 전력거래계약(PPA)의 참여 방안, 참여 시기, 전력판매금액의 적절성을 평가

- 안정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위한 설비 유지관리 등 계획 등 평가

□ 산업·경제 효과(15점)

-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국내 경제·공급망) 기여도 평가

< 세부 평가내용 >

-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산업 생태계 기여 여부 등에 대해 평가

- 모듈, 인버터, 구조물 등에 대한 인증제품 및 제조국에 대한 명확한 증빙 필요

□ 사업관리의 합리성(10점)

- 회계관리 계획, 사업 운영계획 등 합리성

< 세부 평가내용 >

- 수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활용 계획(마을 복지활용 또는 배분)과 그에 대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회계관리 계획 등 사업 운영계획의 합리성 평가

□ 지방정부 참여 정도(20점)

- 햇빛소득마을 추진에 대한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역할 종합 검토
-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5점)

< 세부 평가내용 >

- 원활한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 등 이격거리 규제 완화 노력에 대해 평가, 이미 이격거리가 없는 경우는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

-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검토 등 노력(6점)

< 세부 평가내용 >

-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발전사업, 개발 행위 등)에 대해 사전 검토 및 그 수준에 대해 평가

- 지방정부의 설명회 및 교육, 컨설팅, 전담 조직 구성 등 기타 노력(9점)

< 세부 평가내용 >

- 지방정부가 햇빛소득마을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마을(이장단, 마을 주민 등) 대상 설명회 개최여부, 마을 공동체 대상 교육 여부(이장단, 마을 주민 등) 및 컨설팅 추진 여부, 그 외 전담조직 구성·운영 등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에 대해 종합 평가

※ 다양한 부처 또는 부서의 노력 증빙시 우대(예: 에너지 부서와 마을 공동체 관리 부서 등 참여), 평가 내용은 햇빛소득마을 관련 내용에 한함

< 가점 >

□ 정책목표 우대(3점)

- 인구감소(관심)지역 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해당여부

인구감소(관심)지역 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해당없음
3점	0점

< 세부 평가내용 >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①인구감소(관심)지역(공고일 시점) 및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②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해당할 경우 가점을 부여

- 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업무안내>자치혁신실>지방소멸대응>인구감소지역지정) 참고
- ②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기타>송변전설비 건설지역 현황) 참고

□ 지방정부의 참여 정도(3점)

- 지방정부(공공기관 포함)의 부지 제공 여부

< 세부 평가내용 >

-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역·기초 지방정부 소유의 부지(지방 공공기관 포함)를 마을 공동체에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 마을 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입지를 발굴하고 부족한 입지에 대해 지방정부 소유의 부지 제공 여부와 수준을 평가
 -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전체 입지를 확보시 만점으로 적용

□ 사업관리(2점)

- 햇빛소득마을 관리자의 채용 및 활용 계획

< 세부 평가내용 >

- 마을 공동체 중심의 햇빛소득마을의 안정적 추진 위해 햇빛소득마을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업무(회계, 정산 및 태양광 기초 유지관리 등)를 부여시 가점을 부여, 관리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 등을 고려
- 햇빛소득마을의 사업 운영과정에서 사후관리 통해 확인 예정

다 사업시행

1) 시공사(ReSCO) 선정

사업 초기 단계에서 시공 품질과 사업관리 역량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검증된 ReSCO 등록업체 중 마을의 사업유형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 ReSCO을 통해 추진하는 이유

- 사업 초기 단계에서 시공 품질과 사업관리 역량을 확보하고, 통합 설계·시공·조달 등을 통한 비용 부담을 낮춰 원활한 사업을 추진을 위해 역량있는 기업을 ReSCO에 등록하여 추진

□ 주요내용

- ReSCO 등록업체 중 해당 마을의 사업유형(육상형, 건물형, 수상형, 영농형 등)의 시공경험 및 설계경험을 바탕으로 선정
 - 사업유형별 설계·인허가·시공 업무가 가능한 자격 보유 적격업체 선정
 - 공사 범위, 하자 보수 책임, 위약금 조항 등이 포함된 표준계약서 기반으로 마을협동조합-ReSCO 계약 마을(협동조합)이 체결

□ 지원사항

- (한국에너지공단) ReSCO 등록업체 정보 제공 및 선정 업체 행정 처분 이력 확인, 도급계약서 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4월, 매월 업데이트 예정)

※ ReSCO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6.3.31.(화) ~ 4.10.(금) / 최초 접수 이후 매월 1일~15일 상시 접수
- 접수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에 접수

2) 실시설계

기술기준에 부합하는 설계를 실시합니다.

□ 주요내용

- 시공 품질 확보, 안전기준 준수, 각종 인허가 취득을 위한 설계 실시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원별 시공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KEC)에 부합하도록 설계
 -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공 방향, 최적 배치·공사 계획 등 검토
 - 구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서·검토확인서 제출
 - 전기 안전기준 적합 여부 검토를 위한 전기안전공사 사전 기술검토 실시
- 공공기관 부지 활용시, 해당 관리기관에 사용허가 신청

□ 지원사항

- (ReSCO) 마을공동체가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 행정, 교육, 운영 등 사업의 전 주기를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적격성 검토 및 실시설계도서의 정책자금 지원기준 적합여부 검토, 시공기준 제공
 - 기자재 표준 및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제공(KS 인증 및 탄소등급 확인 등), 표준 설치 기준 제공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점검기준(KESC) 부합하는지 법적 검토
 - 태양광 모듈, 인버터, 변압기 등 용량 산정과 배선 설계 안전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과부하, 누전, 지락(대지와 전선이 접촉), 단락(합선) 등 사고 발생시 보호장치의 설계 및 시공 적정성 확인

3) 각종 인허가

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 법적 인허가 절차를 완료합니다

□ 주요내용

- (발전사업허가) 마을(협동조합)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요건을 갖춰 기초 지방정부에 신청
 - 기초 지방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계통연계, 기술인력 확보 계획, 손익 등을 검토하여 허가 승인
 - * 허가권자: (1MW 이하) 시장·군수, (2~3MW) 시·도지사, (3MW 초과) 기후부장관
 - 한국전력공사는 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계통영향검토(용량·기술) 의견 회신, 개략 공사비 등 안내
 - * 재생e 접속가능 여유용량은 한전 전력거래계약 신청순에 따라 확정되어 전력거래 신청 후에 연계 가능 여부 변동될 수 있음
- (개발행위허가) 마을(협동조합)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요건을 갖춰 기초 지방정부에 신청
 - 기초 지방정부는 도시계획 조례, 공사계획,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허가 승인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마을(협동조합)은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춰 환경청에 신청
 -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관리지역(10천m²이상), 농림지역(7.5천m² 이상), 보전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5천m²이상)
 - 환경청은 태양광 패널 설치에 따른 식생 훼손이나 수질오염 가능성 검토하여 적합성 판정
- (재해영향평가) 마을(협동조합)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춰 기초 지방정부에 협의 요청
 - * 재해영향성검토 : 면적 관계없음
 -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30일+10일) : 면적 5천~5만m², 길이 2~10km
 - * 재해영향평가(45일+10일) : 면적 5만m²이상, 길이 10km이상
 - 기초 지방정부는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협의의견을 마을(협동조합)에 통보하고 마을이 보완 완료하면 협의 완료 통보

4) 전력거래 계약 신청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절차입니다.

□ 주요내용

- 발전소에서 생산될 전력의 판매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계약 신청 단계

□ 지원사항

-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계약 신청 접수, 전력계통 여유용량·기술 검토 및 계통접속 순번 확정, 경과지 현장 조사, 접속공사 설계, 고객부담금 청구
- (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정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 요건의 충족여부 확인 및 REC 가중치 확정

□ 관련법령

-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른 전력거래 신청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전력수급계약 신청

□ 전력 거래유형 결정 및 신청(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전력거래계약(PPA))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 (SMP+1REC) 기준 낙찰된 고정가격으로 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간 20년 거래계약

① SMP

- (한전 거래) 한전에 전력구입계약 신청

* 신청서류 : 전력구입계약 신청서, 전기사용 신청서(소내전력), 발전사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발전설비(인버터) 시험성적서, 내선설계도면, 개발행위 허가서 등

- (전력시장 거래) 한전에 전기설비 이용계약 신청 및 계약체결 후 전력거래소 회원가입

* 신청서류 :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서, 전기사용 신청서(소내전력), 발전사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개발행위 허가서 등

② REC

- 발전소 준공 후 사용전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설비확인 신청, REC(공급인증서) 발급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신청절차 >

- ① 입찰 공고 예정(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 ② 입찰 접수 : 입찰참여서 및 첨부서류 제출(→에너지공단)
- ③ 평가, 선정 및 배분 : 선정된 발전소를 공급의무자에게 배분
- ④ 계약

○ 전력거래계약(PPA)

- ① 제3자PPA : 구매자와 협의 후 한전에 제3자간PPA 신청

- ② 직접PPA : 구매자와 협의 후 한전에 전기설비이용계약 신청

* PPA계약은 민간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체결되는 사항으로, 정부가 직접 매칭 등을 하지는 않으며, 사업자 중심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방식임

□ 유의사항

- 전력거래계약 신청 후에 연계가능여부 및 접속순번 등이 결정
- 한전은 연계용량·기술검토 후 계통여유 유무에 따라 햇빛마을이 신청한 접속방안을 검토하고, 접속공사(또는 보강공사) 설계 및 고객부담금 수납 후 착공

5) 공사계획 신고

발전설비의 구조적 안정성, 설비의 적합성 등을 사전에 검토 받아 공사 시작(착공)을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 주요내용

- 전기설비 설치 전 안전성과 기술기준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 지원사항

- (ReSCO) 설계도면, 기술시방서, 공정표 등 공사계획 인가/신고에 필요한 전문 기술 서류 작성, 감리원 배치 신고
- (기초지방정부) ReSCO가 제출한 공사계획 신고서 검토 후 기술 기준 및 법적 하자가 없을 시 공사 계획 신고증명서(필증) 발급
- (한국전기안전공사) 시공 전 발전소의 전기설비 안전성 및 시공 적정성을 검토 후 사전기술검토 확인증 발급

□ 세부절차

- 설계 및 공사 과정의 안전을 감독할 감리원을 선정하고 한국전력기술인 협회에 감리 배치 신고 후 감리원 배치확인서 발급
- 공사계획, 공사공정표,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설계도면 등 관련 기술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전기술검토 완료 후 기초 지방정부 공사계획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사전기술검토서(한국전기안전공사), 감리원 배치확인서 등 첨부

- 공사계획 신고 후 주요 기자재(모듈, 인버터 등)의 규격이나 용량, 위치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득한 후 시공

신청서류		비 고
1	공사계획신고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2	공사계획서	법정서식은 없으며, 세부설계 결과와 공사계획을 바탕으로 작성
3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4	공사공정표	
5	기술시방서	
6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용량 500kW 이상인 설비로서 고압이상으로 전력계통에 연계되는 태양광발전설비
7	감리원 배치확인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2

□ 관련 법령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전기술검토서 작성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6) 정책자금 신청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합니다.

□ 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한국에너지공단)에 맞추어 정책자금 지원 신청을 하고 추천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 ※ 이차보전을 통한 금융지원도 검토 중이며, 확정시 기후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

□ 지원사항

- (기후환경에너지부) 금융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공고, 접수, 대상자 선정 및 추천서 발급
- (금융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추천서에 따른 사업 추진 자금 대출
-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마을 자부담 등 자금 조달계획 수립 및 금융기관 협의 지원, 자금신청 서류 사전 검토, 보완

□ 세부절차

-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 확인
- (지원조건) 설비투자비의 최대 85%, 이자율 2.0%(‘26.4.1.기준,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www.knrec.or.kr)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접수
 - 발전사업 허가증, 공사계획 신고필증(또는 신고서), 시공계약서, 주민 참여 확인 서류 등 필수 제출물 사전 확인 및 구비
- 사업의 타당성, 시공업체의 적격성, 예산 확보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 통과 시 '금융지원 대상 추천서'발급
- 신청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담보 설정 및 신용도 조사 등을 실시 한 후 실질적인 대출 실행
- 최종 준공 후 자금 집행 내역 보고 및 설비 설치 확인 실시

□ 관련 법령

- 「신재생에너지법」 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지침」에 따른 자금지원

기 착공·시공

승인된 설계도서와 안전 지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며 철저한 현장 관리로 고품질의 발전소를 건설합니다.

□ 주요내용

- 기자재 입고, 토목 및 전기 공사, 구조물 설치를 진행하며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병행

□ 지원사항

- (ReSCO) 착공 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사일정, 장비 진출입 동선 등 공유
 - 착공계 제출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배치 후 시공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맞게 주요 기자재 반입·시공
- (기초지방정부) 착공 신고 접수 및 인허가 시 부여했던 조건 이행 여부 확인
- (기초지방정부·농어촌공사·수자원공사) 공공부지 사용허가 임대 계약 조건 이행 여부 확인 및 사용허가 계약 체결
- (한국에너지공단) 정책자금 집행을 위해 기성고(공사진행률) 확인 협조 및 사용되는 제품이 승인된 KS 제품인지 모니터링
- (한국전력공사) 고객 부담금 수납 후 접속공사 시공
 - * 한전 접속공사 중 천재지변, 인허가 지연, 민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정 소요 일수가 변동될 수 있음

□ 세부절차

- 공사계획 신고 수리 후, 공사감리원이 배치된 상태에서 실제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착공 신고
-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KS 인증 제품으로 활용하여 공사 진행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이 공사 과정을 감독하고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현장 감독 및 감리업무 수행
- 사업 전반에 대한 품질·기술·안전 이행 여부 점검 및 공사 현장 관리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원별 시공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 공정표에 따른 공사 진행 상황 점검, 지연 및 문제 발생시 대책 수립
 - 설계도서 및 기술규격에 따른 주요 기자재 품질 점검
 - 재해예방기술지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 설비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및 성능 확인을 통해 발전 효율 확인

□ 관련 법령

-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설계 및 시공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술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른 공사 중 감리원의 배치

8) 사용전검사

설비 설치가 완료된 후, 설비가 공사계획신고 내용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최종 검증을 받는 법정 절차입니다.

□ 주요내용

- 공사계획신고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등의 전반적인 전기설비 안전에 사항을 검사

□ 지원사항

- (ReSCO) 준공 예정일 전후로 전기안전공사에 검사 신청 및 수수료 납부
 - 검사 당일 현장 상주하여 분전반 개방 등 검사원 업무 보조
 - 사용된 모듈·인버터 시험성적서, 시공사진 등 정리 제출
- (한국전기안전공사)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 일치여부 및 접지저항, 절연상태 양호여부, 보호장치 작동 시험 등 검사 후 사용전검사 합격증 발급

□ 세부절차

- 시공 완료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검사 신청

신청서류		비 고
1	사용전검사 신청서	
2	공사계획신고 수리서 사본	
3	설계도서	도면·전기계산서·시방서 등
4	감리원배치확인서	
5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 검사 일정 확정 및 용량별 산정된 법정 검사 수수료를 납부

○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원의 현장 검사 실시

감사 준비서류		비 고
1	인증 및 시험성적서	모듈·전력변환장치·접속함·고압기기 등
2	지지물의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스파이럴 방식은 구조안전확인서 추가 제출
3	DC지락차단장치 시험성적서	설계도면, 용량계산서, 기술계산서 등
4	안전성능 시험성적서	BIPV 및 수상형 구조물 등
5	수검자 준비자료	현장 점검기록표*

* 점검기록표란 태양광발전설비 시공 완료 후 사용전검사 이전 단계에서 수검자가 모듈, 인버터, 접속함, 전기설비계통(차단기, 변압기, 전선로 등) 전기적 안전성 및 발전 성능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점검기록표

○ 사용전검사 결과, 합격인 경우 ‘사용전검사 필증’발급

○ 합격 필증 수령 후 1개월 이내 ‘RPS 설비확인’신청

□ 관련법령

○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실시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실시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1개월 내 설비확인 신청

9) 전력거래 계약 체결

상업운전 개시전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계약서 각 조문 내용과 비교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입니다.

□ 주요내용

-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하기 위한 권리 확보

□ 지원사항

- (ReSCO) 전력수급계약 체결 관련 구비와 절차에 대한 업무 대행

□ 전력거래 계약체결

- (한전 거래) 계약관련 준비서류 이상여부 확인 후 계약 체결

준비 서류

1	사용전검사 필증	6	발전설비 특성자료
2	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7	계좌이체 약정서
3	계기시험성적서(500kW미만 저압 제외)	8	통장 사본
4	표준전력구입계약서	9	인감증명서
5	발전기 병렬운전조작합의서	10	신분증 사본

- (전력시장거래)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체결 후 전력거래소에서 계량설비 봉인 및 전력거래 개시 승인 받아야 함

준비 서류

1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서	3	발전설비 특성자료
2	병렬운전 조작합의서	4	수전설비 등 상세계획자료

□ 관련법령

-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른 전력거래 신청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전력수급계약 신청

10) 준공검사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 설비가 설계도서 및 각종 인허가 내용과 일치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준공인가'를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 주요내용

- 공사가 완료되면 설계도서 및 인허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하며, 준공검사 완료 후 준공인가 취득

□ 지원사항

- (기초지방정부) 인허가 당시 제출했던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현장 확인 및 개발행위 준공실시 필증 발급
- (ReSCO) 시공 사진, 폐기물 처리확인서, 주요 자재 검수 보고서 등을 포함한 준공도서 작성 및 제출
 - 준공 이후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 발행하여 시설 품질 보장
- (한국에너지공단) 마을 협동조합의 시설물 관리 및 발전소 모니터링을 위해 설비 조작, 안전 수칙 등 교육

□ 세부절차

- 공사 완료에 따라 기초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에 준공검사 신청
- 사용전검사 합격증 등 앞서 완료된 선행 검사 서류를 포함하여 구비서류 및 준공도서 제출
- 기초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 상태와 설계도서와의 부합 여부 점검
- 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 최종 준공인가 취득

□ 관련법령

-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

11) 사업개시 신고 및 RPS 관리

사용전검사와 준공을 마친 후 발전사업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을 위한 설비 적합성을 최종 확인받는 단계입니다.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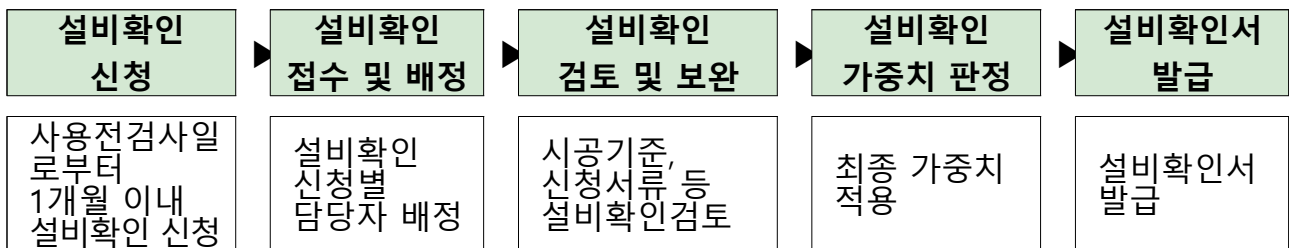
- 발전소 준공 후 실제로 전력 생산 및 판매 업무를 시작했음을 관할 기초(광역) 지방정부에 알리고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설비의 적합성을 확인받아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고 거래할 수 있는 자격 취득

□ 지원사항

- (ReSCO) 지방정부 신고서식 및 설비확인을 위한 업무 대행

□ 세부절차

- 발전소 소재지 기초(광역) 지방정부에 사업개시신고서 제출
- 사용전검사 합격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온라인으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접수



□ 관련법령

-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라 발전소 소재지 기초(광역) 지방정부에 신고
-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에 따라 사용전검사 합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재생에너지센터(한국에너지공단)에 설비확인 신청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8조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장

라 사후관리

1) 발전설비 운영

발전소 준공 후 최적의 발전 효율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일상적인 관리 단계입니다.

□ 주요내용

- 실시간 모니터링 및 태양광 모듈 세척 및 전기 배선 점검 등

□ 지원사항

- (ReSCO) 설비 고장 시 신속한 보수 지원 및 하자보수 이행
- (마을협동조합) 패널 파손·오염, 울타리 훼손 등 육안 점검 및 발전소 주변 제초작업 등 시설 관리
- (운영·관리(O&M)업체) 24시간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인버터 정지나 효율 저하 실시간 감시하고, 이상 발생 시 즉시 출동·조치

□ 세부내용

- 자체 인력 양성 또는 전문업체 운영관리 위탁을 통한 발전소 운영
 - 발전량 모니터링, 장애 발생 대응, 유지관리 점검 등을 통한 안정적 운영
-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매월 또는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 부속자재 보수,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등 운영관리 비용 지출
- *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행 비용 (1.6백만원/년)
- 축적된 발전 데이터를 분석하여 효율 저하 원인 파악 및 개선

□ 관련법령

- 「신재생에너지법」 제30조의4에 따라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2) 정기검사

운영 중인 발전설비가 법적 기술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주기적으로 확인받는 법정 검사입니다.

□ 주요내용

- 최초 사용전검사 이후 일정 기간마다 전기설비 법정 안전검사 수행

□ 지원사항

- (한국전기안전공사) 발전소의 정기검사 도래 전 사전 안내 및 법정 안전검사 실시

□ 세부절차

- 법정 주기에 맞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정기검사 신청

* 전기안전여기로(www.safety.kesco.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최초 사용전검사 후 검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발전소 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법정 안전검사 실시

- 태양광 발전설비 (4년)

- ESS 설비 (옥내: 1년, 옥외: 2년(단, 배터리용량 1MWh이상 1년))

□ 관련법령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정기검사 실시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시기 및 절차 진행
수칙」 제12조에 따라 시기 및 절차 진행

3) 수익관리

발전소 상업운전 개시 이후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한 SMP 정산 및 REC 거래·배분 관리를 위한 단계입니다.

□ 주요내용

- 실시간 발전량 모니터링을 통한 SMP 정산 확인 및 REC 발급·판매

□ 지원사항

- (금융기관) 마을 단위 발전 수익의 투명한 정산 및 비용 집행 관리 지원
-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전력판매대금 정산, 송배전망 접속 상태 유지 등 점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및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등 계약 체결관리 지원

□ 세부절차

- 매월 발전소 상업운전 발전량 계량 및 한전/전력거래소 정산 내역 확인
- 에너지공단 REC 발급 신청 및 현물시장 매도(또는 고정가격계약 이행)
- 전용 계좌로 대금 수령 후 필수 운영비(안전관리, 보험료, O&M) 지출
- 협동조합 정관에 따라 수익금 운용 집행 및 분기별 사후 보고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제37조 납부세액에 따라 부가가치세 발행
- 「법인세」 제3조 납세의무자, 제13조 과세표준,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3. 주요 질의응답

1. '마을'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리(里)'의 범위는? 다수 마을이 하나의 협동조합 구성이 가능한지?

- 본 사업에서 '마을'은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른 행정리임
 - 행정리의 구체적 범위는 관할 읍·면 또는 기초 지방정부의 담당부서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
- 인접한 행정리까지(다수 마을이) 하나의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도 가능함
 - 다만, 이는 인접 행정리를 하나의 행정리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며, 각 행정리는 주민동의 등 공고문상 참여요건을 각각 충족할 필요
- 아울러, 하나의 행정리에서는 하나의 협동조합만 신청 가능함
 - 이는 행정리내 사업주체를 일원화하여 주민혼선을 방지하고, 주민동의·사업계획 수립·수익배분 등 통합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 ▶ 동 사업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 지방소멸 대응 등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농어촌 대상으로 우선 추진
- ▶ 동 지역으로의 확대는 올해 사업 추진 경과와 여건 등을 감안해 검토할 계획

2. 주민 70%는 조합원 기준인지? 전체 주민 기준인지?

- 동의가 필요한 70%는 조합원이 아닌 주민(개인) 기준임
 - 협동조합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 해당하며, 주민동의를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2026년 3월 31일 기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마을 자치규약상 자격을 갖춘 전체 주민을 기준으로 판단함

3. 협동조합 설립 요건은? 조합설립이 어려운 마을은 어떻게 지원하는지?

-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마을주민* 10명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하여야 함. 발기인은 최소 5인 이상이고, 한 가구에서 1명을 초과한 발기인은 인정되지 않음

* 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마을에 1년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주민 중, 마을 자치 규약 등에 따라 주민 자격을 갖춘 자

- 조합 설립이 어려운 마을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중간지원조직 전문가가 협동조합 구성·운영을 지원할 계획
 - 아울러 표준정관 제공, 마을리더 교육, 주민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 조합 설립과 초기 사업 준비를 지원할 예정임

4. 비조합원인 마을 주민들에게 수익배분이 가능한지?

- 조합원으로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주민참여 수익을 수취하는 것이 재생에너지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상 기본 취지임
- 다만,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 등에서 수익 배분방식 등을 정할 수 있는바, 비조합원인 마을 주민에게 수익 배분이 가능함
 - 사업 수익은 주민복지 사업 등 마을 공동 활용, 지역주민 배분 등 지역환원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구체적인 방식은 마을 합의를 통해 정관과 사업계획 등으로 정할 사항임
 - 수익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투명하게 명시하여야 함

5. 시설용량을 300kW 이상 1MW 이하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 마을공동체 전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유희부지 발굴 촉진, 안정적인 수익 확보, 실제로 운영되는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설 용량을 최소 300kW로 설정하였고

* 태양광 사업의 평균 용량(12~25)은 전체 154kW, 건물 104kW, 일반부지 211kW 수준

- 대규모 사업 중심으로 진행될 우려와 주민 주도형 마을 단위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1MW 이하로 정함

* 다만, 1MW를 초과할 경우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他요건 충족 여부,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6. ReSCO를 통해서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

* **R**enewable **E**nergy **S**ervice **C**ompany(재생에너지 종합 서비스기업)

- 주민 주도 사업은 부실시공의 부담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시공 품질과 사업관리 역량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한 ReSCO가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검증된 역량과 신뢰성을 보유한 ReSCO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모를 통해 등록하고 목록을 공개할 예정으로

- 사업 초기 단계에서 시공 품질과 사업관리 역량을 확보하고, 통합 설계·시공·조달 등을 통해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임

《 ReSCO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 ※ 한국에너지공단 공고문(3.31) 참조

- 전문인력 보유, 책임보험 가입, 중대재해 유무 여부, 세금체납 유무 등을 기준으로 신청 요건으로 정했고,
 - 전문성, 시공실적, 주민참여 실적, 정부정책 협력 정도, 기업 경영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 예정(3.31 공모, 4월중 선정·목록 공개)
 - 아울러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컨소시엄 구성, 협동조합 설립 자문 등 햇빛소득마을 사업 지원 수행시 가점을 부여
- ⇒ 종합점수 75점을 넘기면 등록 가능, 유효기간 1년(매년 갱신심사)
- ⇒ 신규기업도 자격을 갖추면 ReSCO에 진입할 수 있도록 수시 신청을 받고, 매월 등록 확인서 발급

《 지역업체도 참여가 가능한지? 》

- ReSCO는 자격을 갖춘 기업을 등록·공개하기 때문에 지역여부와 관계 없이 자격을 갖춘 기업은 참여가 가능하며, 역량을 갖춘 다양한 지역 기업들이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 예정

7. 1차 선정과 2차 선정은 무엇이 다른지?

- 1차와 2차는 신청 접수와 결과 발표 시기를 나누어 운영
 - 준비가 된 마을은 먼저 선정하여 조기 성과를 창출하고, 추가 준비가 필요한 마을에는 보완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임
- 1차와 2차의 기본적인 참여요건과 평가기준은 동일하며, 선정 물량은 사전에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 수요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8. 중국산 태양광 기자재가 확산되는 것 아닌지?

- 모듈은 저탄소 2등급 이상($655\text{kgCO}_2/\text{kW}$)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인버터는 KS 등을 통해 국내 제조 여부를 확인하여 국내 생산기반 제품 활용 유도
- 마을 선정시 '산업·경제 효과성' 지표를 통해 산업생태계 기여도 종합 평가를 수행하여, 태양전지(셀)·구조물 등 정량화가 어려운 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노력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

9. 어떤 부지가 우선 권장되는 것인지?

- 안정적 사업추진과 경제성 제고를 위해 마을 유희부지 및 공동재산* 활용을 우선 권장하며, 저수지, 비축농지 및 국공유지 중 유희부지도 발굴·활용 가능**

* (예시) 마을회관, 마을창고 지붕, 체육부지, 주차장 등

** 평가시에도 지방정부(공공기관 포함)의 부지 제공 여부를 반영

- 다만 유희부지라고 모두 사업 대상지인 것은 아니며, 해당 부지를 소유·관리하는 기관,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등을 통해 별도 확인 필요

《 이격거리가 있어서 사용이 제한되는 부지가 있는데? 》

- 현재 이격거리는 지자체 자율로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법 개정으로 9월 부터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격거리가 미적용됨

* (참고) 이격거리 관련 재생에너지법 국회 통과(2.12.), 공포(3.17.), 시행(9.18.)

- 법 시행 전이라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추진단에서는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등을 안내할 계획임

- 여주시의 경우, 조례로 이격거리를 예외로 운영 중

< 여주시(구양리) 사례 참고 >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2) 4. 사. 바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

2)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

(여주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3조제1호) 마을공동체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10. 계통부족 지역도 신청할 수 있는지?

- 공모, 신청, 인허가 단계에서 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 등을 안내할 예정(한전 각 지역본부)
- 전력계통이 부족한 햇빛소득마을에 대해 우선 접속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음
 - * 분산에너지법, 전기사업법 개정(상임위 계류중) → 상반기 중 통과를 위해 노력중
 - 법 개정 전까지는 ESS 구축 재정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ESS 연계 계통접속을 지원할 예정
 - * ESS 설치비용의 최대 90% 지원(정부 50%, 지방정부 40%)
- 사업계획서 작성, 발전사업허가, 한전 접수단계에서 민관합동현장 지원단, ReSCO 컨설팅 등을 통해 접속방안 안내 예정

11.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은 어떤 지원을 하는지?

-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은 협동조합 구성·운영, 주민 컨설팅, 인허가, 부지발굴, 자금, 계통 확인까지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협업체계임
 - 광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기초 지방정부, 에너지공단, 한국전력,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중간지원조직이 함께 참여하여, 마을의 요청 등에 대해 지역 단위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

12.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역할은?

- 광역·기초 지방정부는 햇빛소득마을의 원활한 사업 준비와 추진을 지원하는 핵심 협력 주체임. 지방정부 역할이 별도 평가항목으로 포함
 - 광역 지방정부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총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기초 지방정부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
 - 기초 지방정부는 마을과 가장 가까운 현장 지원 주체로서,
 - 이격거리 규제 완화, 발전사업허가 등 인허가 검토, 주민설명회·교육·홍보, 유희부지 발굴·제공, 사업 신청 등 마을의 사업 준비와 실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13. 선정 이후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 선정된 마을은 일정 기한 내 발전사업허가 취득,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등 참여, 발전소 건설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함
 - * 발전사업 허가 :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또는 PPA : 허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발전소 건설 후 사용전검사 : 허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아울러 마을 선정시 발전사업 허가 등 인허가 완료 후 한전에 전력 거래계약을 신속히 신청하여야 함
 - * 사업계획 작성 당시 계통 여유용량이 있더라도, 한전 전력거래계약 신청 후 여유 용량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기타 선정 당시의 참여요건과 의무사항을 유지해야 하고, 햇빛소득 마을 통합 네트워크*(가칭, 에너지공단 구축 예정)에 참여해야 함
 - * 주요기능 : 마을리더 등 교육, 마을 태양광 사업 우수사례 공유 등

4. 지원신청 서류 (서식 등)

[서 식 1] 햇빛소득마을 신청전 체크리스트 1부.

[서 식 2] 햇빛소득마을 지원 신청서 1부.

[붙임 서식1] 마을총회 의결서 1부.

[붙임 서식2] 사업추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마을주민용) 1부.

[서식 3] 햇빛소득마을 사업계획서(마을 공동체용) 1부.

[붙임 서식3] 조합원 명부 1부.

[붙임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조합원용) 1부.

[서 식 4] 햇빛소득마을 사업지원계획서(기초 지방정부용) 1부.

[서 식 1] 햇빛소득마을 신청전 체크리스트

햇빛소득마을 신청전 체크리스트

구분	검토 내용	충족 여부
1	(수용성 확보)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 총회, 주민 70%이상 동의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수용성을 확보하였는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협동조합 구성)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등기를 완료 하였는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협동조합 구성원) 마을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 10인 이상으로만 협동조합을 구성하였는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협동조합 정관) 협동조합 정관에 주요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명시하고, 협동조합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는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재원 확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마을 기금, 마을 펀딩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였는지? ※ 마을 공동체와 정부·지방정부, 지역상호금융기관의 재원 지원 이외의 외부 재원 지원은 햇빛소득마을에 신청이 불가하며, 추후 확인시 선정 취소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	(태양광 발전설비 계획)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입지의 확보, 계통연계 가능여부 확인, 투자비 확보, 수익성 확보 방안 등 태양광 설치 및 투자 계획에 대해 검토 하였는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	(사업구조의 확인) 햇빛소득마을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그 수익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 하였는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8	(교육의 참여) 햇빛소득마을 사업 구조, 위험성, 유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을 참여하였는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	(공고문의 확인) 햇빛소득마을 신청을 위한 참여대상, 참여요건,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확인하였는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0	(햇빛소득마을 신청) 기초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적극 지원하는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서 식 2] 햇빛소득마을 지원 신청서

2026년 햇빛소득마을 지원 신청서

신청 법인	협동조합명		이사장(회장) 성명	
	법인 주소		전화번호	
	설립인가번호		조합원 수	
	사업자등록번호			
	협동조합 형태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

신청 담당자	담당자 성명		E-mail	
	전화		핸드폰	

마을 현황	마을 소재지				
	마을 총 주민수	명	사업참여 주민 수	명	주민 동의율 %

담당자 현황	①협동조합명		담당자 전화	
			담당자 E-mail	
	②기초 지방정부명		담당자 전화	
			담당자 E-mail	
	③		담당자 전화	
			담당자 E-mail	

태양광 사업 계획	총 용량(kW)				kW
	설치형태 및 용량(kW)	<input type="checkbox"/> 지상형	<input type="checkbox"/> 건물형	<input type="checkbox"/> 수상형	
		kW	kW	kW	kW
	계통연계 가능여부	<input type="checkbox"/> 계통연계 가능		<input type="checkbox"/> 계통연계 불가 (ESS설치 등)	
태양광 설치비 (백만원)	총 예상 설치비 백만원(100%)		자부담 백만원(00%)		

수입활용 방안	<input type="checkbox"/> 주민복지사업	<input type="checkbox"/> 수익 분배	<input type="checkbox"/> 기타(지역환원 등)
---------	---------------------------------	--------------------------------	-------------------------------------

정책 목표 우대 (지방정부에 확인필요)	<input type="checkbox"/> 인구감소(관심)지역	<input type="checkbox"/> 송·변전 주변지역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	------------------------------------	-------------------------------

위와 같이 햇빛소득마을 공모를 신청하며,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000 마을 총회 결과

1. 총회 개요

- 일시 : 2026.00.00.0(요일) 00:00 ~ 00:00
- 장소 : 000 마을회관

2. 의결 안건

- 안건명 : 햇빛소득마을 사업 참여

3. 의결 내용

- 의결결과 : 찬성/반대(찬성 00표, 반대 00표, 기권 00표)
 - 본 마을은 햇빛소득마을 참여 및 추진에 대해 마을 총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확인함

2026년 0월 0일

00리 마을 대표 000(이장 등)

(서명 또는 직인)

사업추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주민동의 명부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거주지(행정동/리) 사업추진 동의여부	햇빛소득마을 사업추진 주민 동의 여부 확인	사업신청 후 3년

※ 위의 사업추진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마을주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거주지(행정동/리) 사업추진 동의여부	햇빛소득마을 사업추진 주민 동의 여부 확인	사업신청 후 3년

※ 위의 사업추진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마을주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 OO협동조합 햇빛소득마을 사업 마을주민 동의 여부

행정안전부장관(햇빛소득마을추진단장) 귀하

00협동조합 햇빛소득마을 사업 마을주민 동의 명부

순번	성명	거주지 (행정동/리)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여부	사업추진 동의 여부	날짜	서명
1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3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4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5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6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7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8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9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10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11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12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13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14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15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026년 햇빛소득마을 사업계획서(마을 공동체용)

1. 협동조합 현황

협동조합명 (주관기관)		이사장(회장) 성명	
법인 주소		전화번호	
설립인가번호		조합원 수	
사업자등록번호		설립 인가일	
협동조합 형태	<i>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i>		

2. 마을 공동체 현황

가. 마을 현황

구분	내 용
마을명	
소재지	
행정 구역	
인구 정보	

나. 주민 및 주민 동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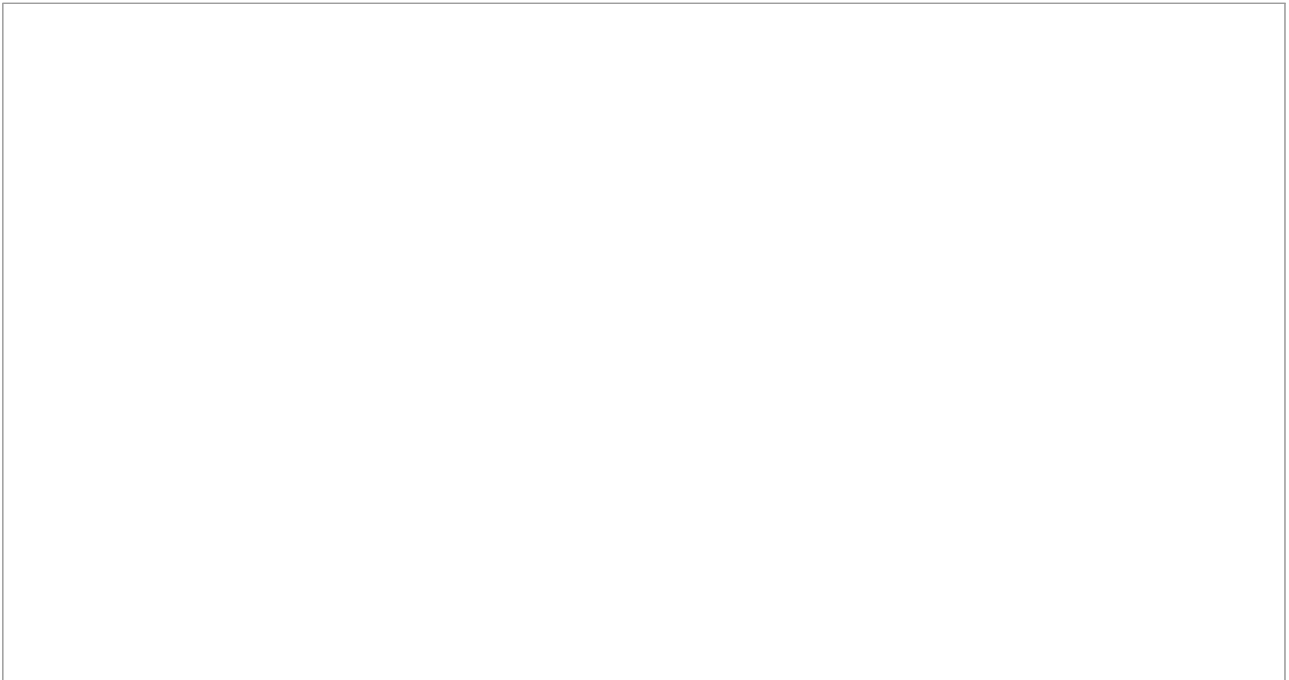
인구 정보	동의 현황	
	동의를 한 주민수	동의율(%)
주민수		

3. 협동조합 세부 현황

가.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구조



나. 협동조합의 운영체계



다. 출자, 수입의 적립, 배분 등 구조



4.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

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 총괄표

총 용량(kW)				kW
설치형태(택1) 및 용량(kW)	<input type="checkbox"/> 지상형	<input type="checkbox"/> 건물형	<input type="checkbox"/> 수상형	
	kW	kW	kW	kW
계통연계 가능여부	<input type="checkbox"/> 계통연계 가능		<input type="checkbox"/> 계통연계 불가 (ESS설치 등)	
총 예상 설치비 (백만원)	백만원(100%)			
예상 사업일정	<input type="checkbox"/> 발전사업허가	<input type="checkbox"/> 공사계획인가	<input type="checkbox"/> 상업운전개시	
	2000년 00월	2000년 00월	2000년 00월	

나. 세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부지)

번호	주소	설치형태 구분	부지 소유자	부지확보 여부	설치용량 (kW)
1		지상형 건물형 수상형 중 택1		○ / X	
2					
3					
...					
...					
...					
합계					

다. 세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부지 확보계획)

--	--

라. 세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태양광 설치비 현황)

총 예상 설치비	자부담 확보 현황
백만원(100%)	백만원(00%)

* 총 예상 태양광 설치비의 15% 이상 자부담 확보해야 함

마. 세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 예시(총 예상 태양광 설치비 산출 근거)

구분			수량	금액(백만원)	
순공사비	직접비	기자재비	모듈		
			인버터		
			구조물		
			기타		
		시공비	기계공사비		
			계전공사비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				
	간접비	설계용역비			
		외자조작비			
		사업주 제경비			
	건설이자				
합계					

바. 세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태양광 설치비 확보계획)

--

사. 세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주요 설비 개요)

구분		수량	출력(Wp)
모듈1	모델명		
	인증번호	KS인증번호	
모듈2	모델명		
	인증번호	KS인증번호	
인버터1	모델명		
	인증번호	KS인증번호	
인버터2	모델명		
	인증번호	KS인증번호	
접속함	모델명		
	인증번호	KS인증번호	

아.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기여 계획

--

5.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관리 계획

가. 수입 확보계획(수입 수준 등 검토한 내용 포함)

수입확보 방안		입찰 예상금액(SMP+1REC, 원/MWh)
<input type="checkbox"/>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input type="checkbox"/> PPA	<i>원/MWh</i>

나. 설비 유지관리 등 운영 계획

다. 기타 사항

6. 햇빛소득마을 사업관리 계획

가. 수익 활용 계획

--

나. 회계관리 계획

--

다. 햇빛소득마을 관리자 채용 및 활용 계획

--

라. 기타 사항

--

7. 태양광 설치 계획 참고자료

구분	설치 예정지 현황	설치 주소	전주번호 (연계점)	부지 소유자	부지 확보여부	설치형태	설치계획 용량(kW)	예상투자비 (백만원)
1	사진		한전간100	개인, 마을,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 / X	지상형, 건물형, 수상형 중 택1		
2	사진		한전간100	개인, 마을,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 / X	지상형, 건물형, 수상형 중 택1		
3								
4								
5								
6								
...								
합 계								

[서 식 4] 햇빛소득마을 사업지원계획서(기초 지방정부용)

2026년 햇빛소득마을 사업지원계획서(기초 지방정부용)

1. 지방정부 및 담당자 현황

지방정부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2. 마을 현황

구분	내 용
마을명	
소재지	
행정 구역	
주민 정보	

3. 지방정부의 햇빛소득마을(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 의견

가. 발전사업허가 검토

--

나. 개발행위허가 검토

다. 환경영향평가 등 기타 허가·승인사항 검토

라. 추가 지원계획 검토

마. 기타 사항

바. 종합검토

4. 지방정부의 햇빛소득마을(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 현황

가. 설명회 개최

나. 교육

다. 컨설팅

라. 기타 노력